

**제3차 임실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7. 08.





---

## 제 출 문

---

임실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에서 의뢰한 “제3차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08.

(사)전북정책발전연구원

이사장 박 소 정

---

### 연구진 /

연구책임

• 민부기 / 책임연구원

연구진

• 장기혁 / 연구원

• 김혜진 / 연구원

• 김종원 / 연구위원

---



# 목 차

## 1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 3
3. 과업의 수행과정 ..... 4

## 2장 여건과 전망

1. 임실군 일반현황 ..... 7
2. 교통약자 현황 ..... 17
3. 장래 교통약자 수 예측 ..... 24

## 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및 만족도

1.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 29
2. 이용만족도조사 ..... 48

## 4장 제2차 증진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1. 제2차 증진계획의 내용 ..... 69
2. 이동편의시설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70
3.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72

## 5장 제3차 증진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

1. 비전 및 목표 ..... 75
2. 중점추진과제 ..... 78

## 6장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세부추진방안

1. 이동편의시설 개선 확충 ..... 85
2. 여객시설편의시설 개선 확충 ..... 89
3. 보행환경 개선 확충 ..... 92
4.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94

## 7장 투자 및 재정계획

1. 재정현황 분석 ..... 97
2. 투자 및 재정계획 ..... 100

## 부록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 ..... 105
2. 만족도 및 통행실태 설문조사지 ..... 126

## ■ 표 차례

<표 2-1> 임실군 위치 .....	7
<표 2-2> 임실군 기상개황 .....	9
<표 2-3> 임실군 행정구역 현황 .....	01
<표 2-4> 임실군 인구 현황 .....	11
<표 2-5>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	21
<표 2-6> 임실군 자동차등록 현황 .....	31
<표 2-7> 도로연장 추이 .....	31
<표 2-8> 2014년 주차장시설 현황 .....	41
<표 2-9> 도로시설물 현황 .....	41
<표 2-10> 예산 추이 .....	51
<표 2-11> 교통관련 예산 추이 .....	51
<표 2-12> 재정자립도 추이 .....	61
<표 2-13> 전국 교통약자 인구대비 .....	71
<표 2-14> 임실군 장애인 추이 .....	81
<표 2-15> 읍·면별 장애인 인구 .....	81
<표 2-16> 임실군 고령자 추이 .....	91
<표 2-17> 읍·면별 고령자 인구 .....	91
<표 2-18> 임실군 임산부 추이 .....	02
<표 2-19> 읍·면별 임산부 인구 .....	02
<표 2-20> 임실군 어린이 추이 .....	12
<표 2-21> 읍·면별 어린이 인구 .....	12
<표 2-22> 임실군 영·유아동반자 추이 .....	22
<표 2-23> 읍·면별 영·유아동반자 인구 .....	22
<표 2-24> 임실군 장애인 추이 .....	32
<표 2-25> 인구추정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 .....	52
<표 2-27> 임실군 장래 교통약자 수 예측 .....	52
<표 3-1> 이동편의시설 조사항목 및 조사대상 .....	92
<표 3-2>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조사 종류 .....	03
<표 3-3> 교통수단 조사대상 .....	13
<표 3-4>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설치종류 .....	13
<표 3-5> 여객시설 조사대상 .....	23
<표 3-6> 도로(보행환경) 조사종류 .....	23
<표 3-7> 도로(보행환경) 조사대상 .....	23
<표 3-8> 임실군 및 전국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종합 .....	33
<표 3-9> 임실군 농어촌버스 안내시설 항목별 설치율 .....	43

<표 3-10> 임실군 농어촌버스 내부시설 항목별 설치율 .....	4.3
<표 3-11> 임실군 농어촌버스 내부시설 항목별 설치율 .....	5.3
<표 3-12> 임실군 농어촌버스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	6.3
<표 3-13> 여객터미널 수평이동시설 항목별 설치율 .....	7.3
<표 3-14> 여객터미널 위생시설 항목별 설치율 .....	8.3
<표 3-15> 여객터미널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 항목별 설치율 .....	9.3
<표 3-16> 여객터미널 항목별 설치율 .....	14
<표 3-17> 버스정류장 종합 .....	34
<표 3-18> 보도부문 항목별 설치 개소수 및 설치율 .....	5.4
<표 3-19> 횡단보도부문 항목별 설치 개소수 및 설치율 .....	7.4
<표 3-20> 교통만족도 조사 내용 .....	8.4
<표 3-21>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9.4
<표 3-22> 걸거나 교통수단 이용 시 신체적 어려움 여부 .....	0.5
<표 3-23> 신체적 어려움 수준 .....	0.5
<표 3-24> 일주일동안 외출횟수 .....	1.5
<표 3-25>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 .....	1.5
<표 3-26>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2.5
<표 3-27> 외출의 주된 목적 .....	2.5
<표 3-28> 외출 시 걸리는 시간 .....	3.5
<표 3-29> 외출 시 불편함 .....	3.5
<표 3-30> 보도이용 만족도 .....	4.5
<표 3-31> 보도 이용 시 불만족 이유 .....	4.5
<표 3-32> 횡단보도이용 만족도 .....	5.5
<표 3-33> 횡단보도 이용 시 불만족 이유 .....	5.5
<표 3-34> 전반적인 도로 만족도 .....	6.5
<표 3-35> 전반적인 도로 만족도(2) .....	6.5
<표 3-36> 버스정류장이용 및 시설환경 만족도 .....	7.5
<표 3-37> 버스정류장이용 시 불만족 이유 .....	7.5
<표 3-38> 버스터미널이용 및 시설환경 만족도 .....	8.5
<표 3-39> 버스터미널이용 시 불만족 이유 .....	8.5
<표 3-40> 전반적인 여객시설 만족도 .....	9.5
<표 3-41> 전반적인 여객시설 만족도(2) .....	9.5
<표 3-42> 일반버스이용 만족도 .....	0.6
<표 3-43> 일반버스 이용 시 불만족 이유 .....	0.6
<표 3-44> 특별교통수단이용 만족도 .....	1.6
<표 3-45>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불만족 이유 .....	1.6
<표 3-46> 전반적인 여객수단 만족도 .....	2.6

<표 3-47> 전반적인 여객수단 만족도(2) .....	2·6
<표 3-48> 개선이 시급한 시설 및 수단 .....	3·6
<표 3-49>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 .....	3·6
<표 3-50>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 .....	3·6
<표 3-51> 개선이 시급한 여객시설 .....	4·6
<표 3-52> 우선추진사항 .....	4·6
<표 3-53> 임실군 전체 만족도 .....	5·6
<표 3-54> 임실군 교통약자 만족도 .....	6·6
<표 3-55> 임실군 일반인 만족도 .....	6·6
<표 4-1> 제2차 임실군의 설치율 및 만족도 달성목표 .....	9·6
<표 4-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	0·7
<표 4-3> 교통수단별 이동편의 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현황) .....	0·7
<표 4-4> 여객시설별 이동편의 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현황) .....	1·7
<표 4-5>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현황) .....	1·7
<표 5-1>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의 정의 .....	6·7
<표 5-2> 임실군 수단 및 시설별 목표치 .....	6·7
<표 5-3>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목표치 .....	7·7
<표 5-4> 교통약자 유형별 만족도 점수 .....	7·7
<표 5-5> 이용자만족도 목표치(모든 분야 70점 이상) .....	7·7
<표 5-6> 농어촌버스 차량의 개선 및 확충사항 .....	8·7
<표 5-7> 여객시설·보행환경 설치율 목표 .....	9·7
<표 5-8>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선 및 확충사항 .....	0·8
<표 5-9> 버스정류장의 개선 및 확충사항 .....	1·8
<표 5-10> 보행환경의 개선 및 확충사항 .....	1·8
<표 7-1> 세입예산 현황 .....	7·9
<표 7-2> 세출예산 현황 .....	8·9
<표 7-3> 재정자립도 추이 .....	9·9
<표 7-4> 연차별 투자계획 .....	0
<표 7-5> 기능별 예산 추이 .....	0

## ■ 그림 차례

<그림 1-1> 과업의 수행 과정 .....	4
<그림 2-1> 임실군 위치 및 행정구역도 .....	8
<그림 2-2> 임실군 2015년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	21
<그림 2-3> 교통관련 예산 추이 .....	51
<그림 2-4> 재정자립도 추이 .....	61
<그림 2-5> 임실군 교통약자 추이 .....	32
<그림 2-6> 임실군 장래 교통약자 수 예측 .....	62
<그림 3-1> 임실군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비교 .....	33
<그림 3-2> 행선지표시(정면) .....	43
<그림 3-3> 행선지표시(후면) .....	43
<그림 3-4> 승강구 .....	53
<그림 3-5> 교통약자용 좌석 .....	53
<그림 3-6> 수직손잡이 .....	53
<그림 3-7> 임실군 농어촌버스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63
<그림 3-8> 주출입구-임실공용버스터미널 .....	83
<그림 3-9> 주출입구-임실역 .....	83
<그림 3-10> 장애인전용화장실-임실공용버스터미널(대변기, 소변기) .....	93
<그림 3-11> 매표소-임실공용버스터미널 .....	04
<그림 3-12> 점자블록-임실역 .....	04
<그림 3-13> 매표소-강진공용터미널 .....	04
<그림 3-14> 승강장-관촌버스터미널 .....	04
<그림 3-15> 임실군 여객터미널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14
<그림 3-16> 보도연석 .....	24
<그림 3-17> 안내판(버스시간표) .....	24
<그림 3-18> 버스정류장(벽돌형) .....	24
<그림 3-19> 대기시설(개방형) .....	24
<그림 3-20> 대기시설(쉘터형) .....	24
<그림 3-21> 임실군 버스정류장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34
<그림 3-22> 평탄성 .....	44
<그림 3-23> 연석높이 .....	44
<그림 3-24> 보행장애물 .....	44
<그림 3-25> 턱낮추기 .....	24
<그림 3-26> 턱낮추기2 .....	44
<그림 3-27> 점자블록 .....	44
<그림 3-28> 임실군 보행도로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54

<그림 3-29> 점형블록 .....	64
<그림 3-30> 교통섬 블록 .....	64
<그림 3-31> 잔여시간표시기 .....	64
<그림 3-32> 음향신호기 .....	64
<그림 3-33> 임실군 횡단보도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74
<그림 5-1> 임실군 비전 및 추진전략 .....	57
<그림 6-1> 교통약자 좌석 안내 .....	58
<그림 6-2> 농어촌버스 내부 모습 .....	68
<그림 6-3> 농어촌버스 정면 모습 .....	68
<그림 6-4> 저상버스 .....	78
<그림 6-5> 상버스 이용 .....	78
<그림 6-6> 장애인콜택시 외부 .....	88
<그림 6-7> 장애인콜택시 내부 .....	88
<그림 6-8> 보행접근로 .....	98
<그림 6-9> 장애인화장실 .....	98
<그림 6-10> 점자블록 .....	99
<그림 6-11> 장애인주차구역 .....	99
<그림 6-12> 휠체어활동공간 부족 .....	19
<그림 6-13> 안내판, 점자블록 미설치 .....	19
<그림 6-14> 차량진출입부 .....	29
<그림 6-15> 턱낮추기 .....	29
<그림 6-16> 점자블록 .....	39
<그림 6-17> 선형블록 .....	39
<그림 7-1> 세입·세출 예산 추이 .....	89
<그림 7-2> 재정자립도 추이 .....	99
<그림 7-3> 연도별 투자계획 .....	100

# I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과업의 수행과정



##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 가. 법적근거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6.1.][[시행일 2012.12.2.]]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2.6.1.][[시행일 2012.12.2.]]

## 나.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 '17년 고령사회와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이동편의 증진계획 마련
  -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및 계획의 중·장기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교통수단, 시설, 보행환경 측면의 이동편의 개선계획 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규모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행가능 목표를 수립하여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및 투자 기준 제시

## 2. 연구범위

- 1) 시간적 범위 : 2017 ~ 2021년
- 2) 공간적 범위
  - 임실군 전역

### 3) 내용적 범위

-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분석
- 보행환경실태조사·분석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원조달 방안

### 3. 과업의 수행 과정<그림 1-1> 과업의 수행 과정



<그림 1-1> 과업의 수행 과정

## Ⅱ

# 여건과 전망

1. 임실군 일반현황
2. 교통약자 현황
3. 장래 교통약자 수 예측



## 1. 임실군 일반현황

### 가. 위치적 특성

- 전라북도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동경 127도 북위 35도에 펼쳐있으며 동쪽으로는 진안군·장수군·남원시, 서쪽으로는 순창군·정읍시, 북쪽으로는 완주군과 각각 접하고 있고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는 29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군의 동부를 전라선이 통과하며, 이와 나란히 전주-남원을 잇는 국도가 지나고, 이 도로는 남원에 이르러 88올림픽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대구·광주와의 연결이 매우 편리함. 그 밖에 진안-정읍, 전주-순창을 잇는 국도가 지나고 있음
- 면적은 597.34km<sup>2</sup>이며 1읍, 11면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2-1> 임실군 위치

군청 소재지	방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면적
		동경	극점		
임실읍 수정로 30	동단	성수면 왕방리	동경 : 127° 27'	동→서 약 31.17km 남→북 약 33.56km	597.34km <sup>2</sup>
	서단	운암면 운정리	동경 : 125° 05'		
	남단	덕치면 천담리	북위 : 35° 27'		
	북단	관촌면 상월리	북위 : 35° 47'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나. 자연환경

#### ■ 지형 및 지세

- 노령산맥에서 뺏어내린 지맥은 서북쪽으로 성수면의 성수산을 만들고 서남쪽으로는 강진면의 백련산, 덕치면의 화문산을 이루고 있으며, 진안군 부귀면, 백운면에서 발원한 소하천은 관촌, 신평, 신덕, 운암 등 여러 줄기를 합하여 섬진강 상류를 이루고 옥정호에 모이게 되어 수려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 북부 경계를 따라 경각산(660m), 옥녀봉(579m), 갈미봉(540m), 성수산(876m)등의 산지가 이어져 있으며, 그 밖에 원통산(604m), 응봉(609m), 백련산(759m)등이 솟아있음

- ❖ 삼계면은 해발고도 100~250m의 분지이며, 임실읍은 해발고도 240m 내외의 고원성소분지를 이루고 있음. 한편 오수면에 이르면 해발고도 130m의 저지대를 이루면서 평야가 발달되어 있음. 진안군 백운면 팔공산에서 발원한 성진강이 군의 서쪽에서 갈담저수지를 이룬 뒤 남동류함
- ❖ 오수면과 삼계면 일대에는 오수천이 흐르는데 이 지역은 심층풍화된 화강암지역으로 토사의 운반이 많아 하천바닥이 높아져 여름철에는 범람의 위험이 높음. 이 지역은 기반암인 화강암류의 심층풍화로 분지의 발달이 촉진되고 있음

<그림 2-1> 임실군 위치 및 행정구역도



### ■ 기후여건

- ❖ 연평균기온은 11.3℃내외, 최고기온은 35.7℃, 최저기온은 -21.5℃ 정도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40.5mm정도로 남부내륙형기후구에 속함. 그러나 운암면, 강진면 등은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로 고랭지기후를 보임
  - 최고극값 34.2℃, 최저극값 -13.4℃로 나타남

<표 2-2> 임실군 기상개황

(단위 : °C, mm, %)

구분	기온(°C)			강수량 (mm)	상대습도 (%)	풍속	
	평균	최고극값	최저극값		평균	평균	최대
2010	11.5	34.5	-15.5	1,795.1	70.3	1.6	9.2
2011	10.7	34.1	-18.7	1,700.0	69.0	1.5	9.5
2012	10.6	35.7	-17.8	1,503.9	69.0	1.5	12.9
2013	11.2	34.8	-21.5	1,400.0	71.0	1.5	10.1
2014	11.5	34.2	-13.4	1,340.5	71.5	1.3	8.4
2015	12.0	35.6	-15.0	843.1	72.0	1.3	8.5
<b>평균</b>	<b>11.3</b>	<b>34.8</b>	<b>-17.0</b>	<b>1430.4</b>	<b>70.5</b>	<b>1.5</b>	<b>9.8</b>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다. 인문환경

### ■ 행정구역

- ❖ 임실군의 행정구역은 1읍 11개면 131개 법정리로 구성되어지며, 총면적은 597.34km<sup>2</sup>로 나타남
  - 임실군 행정구역 중 운암면이 12.77%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지사면이 2.98%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3> 임실군 행정구역 현황

(단위 : km<sup>2</sup>, %, 개)

구분	면적 (km <sup>2</sup> )	구성비 (%)	읍	면	리		반
					행정	법정	
2015	597.34	100.00	1	11	256	131	739
임실읍	67.76	11.34	1	-	35	16	116
청웅면	34.79	5.82	-	1	16	8	42
운암면	76.27	12.77	-	1	18	14	60
신평면	33.88	5.67	-	1	12	7	44
성수면	60.35	10.11	-	1	21	11	57
오수면	40.52	6.79	-	1	32	14	98
신태면	65.84	11.02	-	1	17	9	37
삼계면	54.06	9.05	-	1	21	14	72
관촌면	53.53	8.96	-	1	27	13	65
강진면	50.56	8.47	-	1	21	10	65
덕치면	41.99	7.03	-	1	19	8	39
지사면	17.79	2.98	-	1	17	7	44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 인구현황

- ❖ 임실군 인구(외국인 포함)는 2015년 기준 30,631명으로 2010년 대비 310명 감소하였으며, 세대 당 인구는 2010년 2.23명/세대에서 2015년 2.15명/세대로 감소함
- ❖ 임실군의 세대수는 2015년 기준 14,269세대로 2010년 13,876세대보다 393세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감소에 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핵가족화의 진전과 주택보급률의 증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임실읍(7,51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오수면(4,431명), 관촌면(3,871명)순으로 나타남

<표 2-4> 임실군 인구 현황

(단위 : km<sup>2</sup>, 세대, 명, 명/km<sup>2</sup>)

구분	면적	세대	인구			인구밀도 (명/km <sup>2</sup> )	세대당 인구
			합계	남	여		
2010	597.14	13,876	30,941	15,638	15,303	51.8	2.23
2011	597.20	14,083	31,120	15,774	15,346	52.1	2.21
2012	597.21	13,916	30,264	15,278	14,986	50.7	2.17
2013	597.21	13,947	30,064	15,154	14,910	50.3	2.16
2014	597.21	14,157	30,306	15,325	14,981	50.7	2.14
<b>2015</b>	<b>597.34</b>	<b>14,269</b>	<b>30,631</b>	<b>15,501</b>	<b>15,130</b>	<b>51.3</b>	<b>2.15</b>
임실읍	67.76	3,275	7,511	3,850	3,661	110.8	2.29
청용면	34.79	727	1,529	770	759	43.9	2.10
운암면	76.27	911	1,843	916	927	24.2	2.02
신평면	33.88	900	1,791	936	855	52.9	1.99
성수면	60.35	896	1,870	951	919	31.0	2.09
오수면	40.52	2,007	4,431	2,192	2,239	109.4	2.21
신태면	65.84	736	1,518	805	713	23.1	2.06
삼계면	54.06	883	1,698	828	870	31.4	1.92
관촌면	53.53	1,711	3,871	1,979	1,892	72.3	2.26
강진면	50.56	869	1,807	946	861	35.7	2.08
덕치면	41.99	688	1,316	623	693	31.3	1.91
지사면	17.79	666	1,446	705	741	81.3	2.17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 임실군의 읍·면·동별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임실읍(1.9%)과 신덕면(0.2%)을 제외한 모든 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수면(-1.9%)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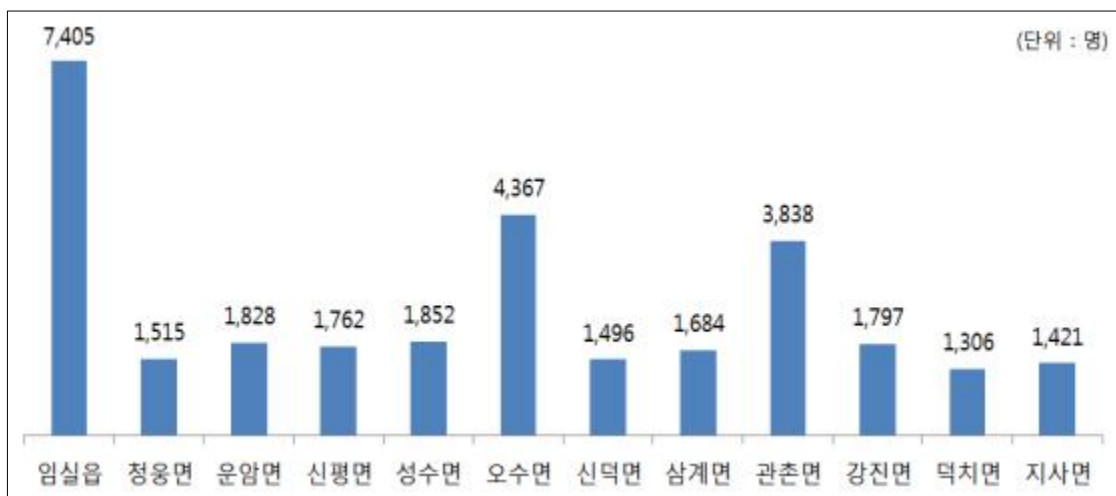
<표 2-5>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임실군	30,593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0.2%
임실읍	6,746	6,848	6,742	6,893	7,269	7,405	1.9%
청웅면	1,539	1,530	1,515	1,495	1,496	1,515	-0.3%
운암면	1,943	1,931	1,915	1,884	1,882	1,828	-1.2%
신평면	1,826	1,961	1,857	1,792	1,751	1,762	-0.6%
성수면	1,855	1,900	1,836	1,809	1,807	1,852	-0.01%
오수면	4,814	4,689	4,543	4,498	4,377	4,367	-1.9%
신덕면	1,487	1,473	1,442	1,443	1,424	1,496	0.2%
삼계면	1,741	1,801	1,719	1,697	1,660	1,684	-0.6%
관촌면	3,979	3,918	3,840	3,811	3,801	3,838	-0.7%
강진면	1,853	1,922	1,831	1,770	1,784	1,797	-0.6%
덕치면	1,331	1,328	1,264	1,244	1,308	1,306	-0.3%
지사면	1,479	1,488	1,452	1,403	1,407	1,421	-0.8%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외국인 제외

<그림 2-2> 임실군 2015년 행정구역별 인구 추이



라. 교통현황

■ 자동차등록 현황

- 2015년 기준 임실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3,338대이며, 2009년 이후 연평균 3.9%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승용차가 8,138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임실군 자동차등록 현황

(단위 : 대, %)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0	11,037	6,267	709	4,023	38
2011	11,507	6,745	608	3,879	39
2012	11,903	6,946	707	4,203	47
2013	12,006	7,022	652	4,281	51
2014	12,602	7,552	613	4,384	53
2015	13,333	8,138	600	4,545	50
연평균 증가율	3.9%	5.4%	-2.8%	2.5%	6.0%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도로 현황

- 지난 5년간 도로연장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연평균 0.37%, 전라북도는 연평균 0.74% 증가하였지만, 임실군은 0.65% 감소하였음

<표 2-7> 도로연장 추이

(단위 : km, %)

구분	도로연장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105,565	105,930	105,702	106,413	105,672	107,527	0.37%
전라북도	7,970	7,997	8,028	8,040	8,170	8,268	0.74%
임실군	515.136	488.726	488.726	497.230	497.814	497.814	-0.65%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임실군 통계연보(2016)

### ■ 주차시설 현황

- 2015년 기준 임실군의 주차장 규모는 619개소 7,522면으로 같은 해 등록 자동차 대수 13,338대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56.4%로 나타남

<표 2-8> 2014년 주차장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면)

구분	계	노상(무료)	노외		건축물 부설
			공영	민영	
개소	619	30	4	35	553
면	7,522	1,355	347	394	5,430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 도로시설물 현황

- 2015년 기준 임실군은 지하차도 1개소, 고가도로 1개소, 터널 20개소, 가로등 8,126개소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표 2-9> 도로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지하차도	고가도로	터널	가로등
2010년	1	1	12	5,681
2011년	1	1	12	7,800
2012년	1	1	18	7,800
2013년	1	1	2	8,126
2014년	1	1	19	8,126
2015년	1	1	20	8,126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마. 재정현황

### ■ 예산현황

- 임실군의 201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6,734,987천 원, 특별회계 22,447,989천 원으로 전체예산은 319,182,976천원임
  - 일반회계의 경우 2012년 255,974,190천 원에서 2016년 296,734,987천 원으로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특별회계의 경우 2012년 25,412,303천 원에서 2016년 22,447,989천 원으

로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2-10>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일반회계	255,974,190	259,803,711	264,105,268	296,561,395	296,734,987	3.9
특별회계	25,412,303	23,009,197	24,559,803	13,893,779	22,447,989	3.9
총계	281,386,493	282,812,908	288,665,071	310,455,174	319,182,976	3.2

자료 : 임실군 홈페이지(각 연도별 예산서 2012-2016)

■ 교통관련 예산현황

- 임실군의 지난 5년간(2011~2015년) 교통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10,539백만 원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1,016백만 원으로 전체의 3.54%로 금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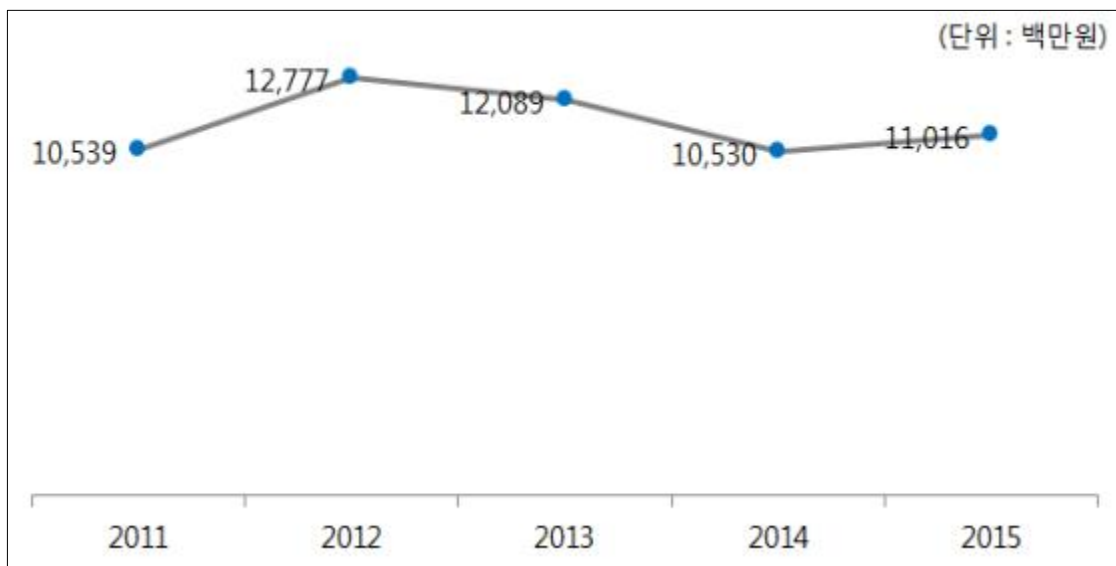
<표 2-11> 교통관련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일반회계 합계	266,554	258,914	261,648	274,089	311,273	4.13
수송 및 교통(%)	10,539 (3.95)	12,777 (4.93)	12,089 (4.62)	10,530 (3.84)	11,016 (3.54)	1.89

자료 : 임실군 홈페이지(지방재정공시)

<그림 2-3> 교통관련 예산 추이



### ■ 재정자립도

- 임실군은 2016년기준 재정자립도가 15.62%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북도 29.6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2> 재정자립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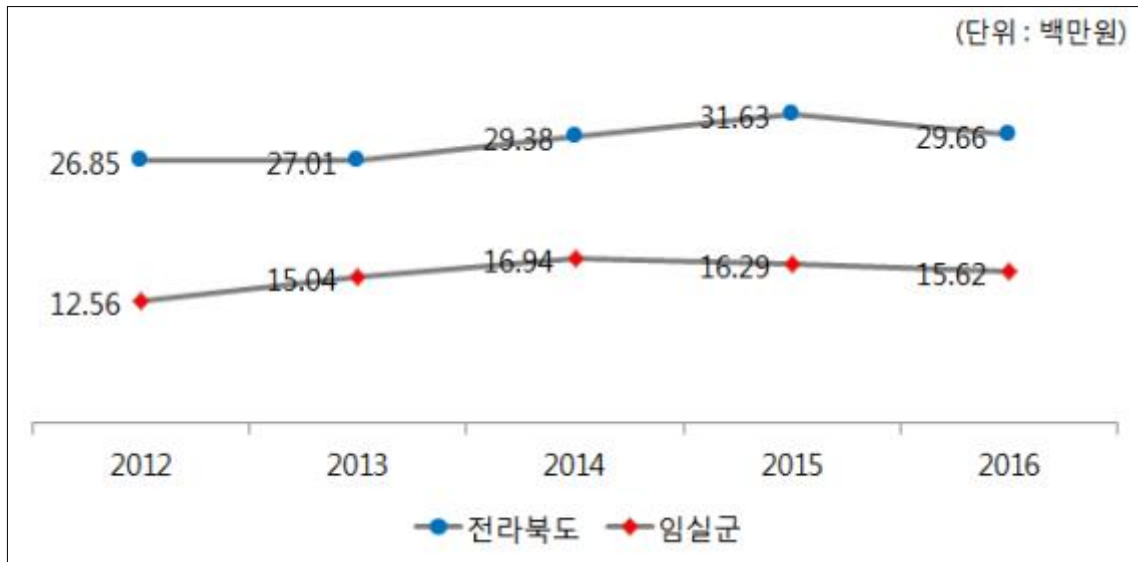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라북도	26.85	27.01	29.38	31.63	29.66
임실군	12.56	15.04	16.94	16.29	15.62

자료 : 지방재정365, 행정자치부

주: 2012~2015년까지는 결산기준의 재정자립도(최종)자료 이용, 2016년은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당초)자료 이용

<그림 2-4> 재정자립도 추이



## 2. 교통약자현황

### 가. 교통약자의 정의

#### ■ 정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4116호, 일부개정 2016.03.29.) 제2조(정의)에 의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

#### ■ 구분

- 장애인 : 임실군 등록 장애인 인구
- 고령자 : 임실군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 임산부 : 임실군 인구 중 출생아 인구
- 어린이 : 임실군 인구 중 5~9세 인구
- 영유아를 동반한 자 : 임실군 인구 중 0~4세 인구

### 나. 전국 교통약자 인구대비 비율

- 2015년 12월말 통계청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14,425,707명으로 전국 인구 51,529,338명 대비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인구가 4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3> 전국 교통약자 인구대비

(단위 : 명, %)

구분	교통약자 합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	14,425,707	2,490,406	6,895,193	438,420	2,334,907	2,266,781
총인구대비	28.0	4.9	13.4	0.9	4.5	4.4
교통약자 대비	100.0	17.3	47.8	3.0	16.2	15.7

자료 : 통계청-행정구역별 1세별 주민등록인구(2015), 월, 분기, 연간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2015), 등록장애인수(2015)

## 다. 교통약자의 현황

### 1) 장애인 현황

#### ■ 장애인 추이

- 임실군 장애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3,265명에서 2015년 3,236명으로 연평균 -0.18% 감소하였으며, 2015년 임실군 전체인구 대비 10.7%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임실군 장애인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임실군 인구	30,593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0.2%
장애인	3,265	3,278	3,285	3,245	3,234	3,236	-0.18%
구성비	10.7%	10.6%	11.0%	10.9%	10.8%	10.7%	0.04%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 읍·면별 장애인 현황

- 임실군 읍면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실읍이 633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평면이 전체인구대비 13.45%로 장애인 거주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

<표 2-15> 읍·면별 장애인 인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장애인수	구성비	그래프
임실읍	7,405	633	8.55%	
청용면	1,515	198	13.07%	
운암면	1,828	197	10.78%	
신평면	1,762	237	13.45%	
성수면	1,852	239	12.90%	
오수면	4,367	466	10.67%	
신평면	1,496	182	12.17%	
삼계면	1,684	204	12.11%	
관촌면	3,838	357	9.30%	
강진면	1,797	186	10.35%	
덕치면	1,306	157	12.02%	
지사면	1,421	180	12.67%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내부자료

■ 고령자 추이

- 임실군 고령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8,857명에서 2015년 9,529명으로 연평균 1.4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2015년 임실군 전체인구 대비 31.5%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임실군 고령자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임실군 인구	30,593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0.2%
고령자	8,857	8,944	9,121	9,219	9,353	9,529	1.47%
구성비	29.0%	29.0%	30.4%	31.0%	31.2%	31.5%	1.70%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읍·면별 고령자 현황

- 임실군 읍면별 고령자 현황을 살펴보면 임실읍이 1,650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계면이 전체인구대비 43.6%로 고령자 거주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7> 읍·면별 고령자 인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고령자수	구성비	그래프
임실읍	7,405	1,650	22.3%	
청용면	1,515	584	38.5%	
운암면	1,828	545	29.8%	
신평면	1,762	598	33.9%	
성수면	1,852	707	38.2%	
오수면	4,367	1,436	32.9%	
신평면	1,496	535	35.8%	
삼계면	1,684	735	43.6%	
관촌면	3,838	1,110	28.9%	
강진면	1,797	595	33.1%	
덕치면	1,306	508	38.9%	
지사면	1,421	527	37.1%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3) 임신부 현황

#### ■ 임신부 추이

■ 임신부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46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연평균 -5.01% 감소하였으며, 2015년 임실군 전체인구 대비 0.6%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8> 임실군 임신부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임실군 인구	30,593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0.2%
임산부	246	230	239	218	210	189	-5.01%
구성비	0.8%	0.7%	0.8%	0.7%	0.7%	0.6%	-4.74%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 읍·면별 임신부 현황

■ 임실군 읍면별 임신부 현황을 살펴보면 임실읍이 68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인구대비 0.92%로 임신부 거주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

<표 2-19> 읍·면별 임신부 인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임산부수	구성비	그래프
임실읍	7,405	68	0.92%	
청웅면	1,515	7	0.46%	
운암면	1,828	7	0.38%	
신평면	1,762	9	0.51%	
성수면	1,852	4	0.22%	
오수면	4,367	8	0.18%	
신평면	1,496	8	0.53%	
삼계면	1,684	5	0.30%	
관촌면	3,838	18	0.47%	
강진면	1,797	12	0.67%	
덕치면	1,306	6	0.46%	
지사면	1,421	10	0.70%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4) 어린이 현황

■ 어린이 추이

- 임실군 어린이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949명에서 2015년 932명으로 연평균 0.29%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2015년 임실군 전체인구 대비 3.1%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임실군 어린이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임실군 인구	30,593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0.2%
어린이	949	942	875	882	907	932	-0.29%
구성비	3.1%	3.1%	2.9%	3.0%	3.0%	3.1%	-0.12%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읍·면별 어린이 현황

- 임실군 읍면별 어린이 현황을 살펴보면 임실읍이 393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인구대비 5.3%로 어린이 거주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1> 읍·면별 어린이 인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어린이수	구성비	그래프																										
임실읍	7,405	393	5.3%	<table border="1"> <caption>읍·면별 어린이 인구 (명)</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어린이수</th> </tr> </thead> <tbody> <tr><td>임실읍</td><td>393</td></tr> <tr><td>청양면</td><td>38</td></tr> <tr><td>운암면</td><td>56</td></tr> <tr><td>신평면</td><td>42</td></tr> <tr><td>성수면</td><td>39</td></tr> <tr><td>오수면</td><td>122</td></tr> <tr><td>신태면</td><td>29</td></tr> <tr><td>삼계면</td><td>40</td></tr> <tr><td>관촌면</td><td>94</td></tr> <tr><td>강진면</td><td>24</td></tr> <tr><td>덕치면</td><td>26</td></tr> <tr><td>지사면</td><td>29</td></tr> </tbody> </table>	구분	어린이수	임실읍	393	청양면	38	운암면	56	신평면	42	성수면	39	오수면	122	신태면	29	삼계면	40	관촌면	94	강진면	24	덕치면	26	지사면	29
구분	어린이수																													
임실읍	393																													
청양면	38																													
운암면	56																													
신평면	42																													
성수면	39																													
오수면	122																													
신태면	29																													
삼계면	40																													
관촌면	94																													
강진면	24																													
덕치면	26																													
지사면	29																													
청양면	1,515	38	2.5%																											
운암면	1,828	56	3.1%																											
신평면	1,762	42	2.4%																											
성수면	1,852	39	2.1%																											
오수면	4,367	122	2.8%																											
신태면	1,496	29	1.9%																											
삼계면	1,684	40	2.4%																											
관촌면	3,838	94	2.4%																											
강진면	1,797	24	1.3%																											
덕치면	1,306	26	2.0%																											
지사면	1,421	29	2.0%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5) 영·유아동반자 현황

#### ■ 영·유아동반자 추이

- 임실군 영·유아동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021명에서 2015년 943명으로 연평균 1.52% 감소하였으며, 2015년 임실군 전체인구 대비 3.1%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임실군 영·유아동반자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임실군 인구	30,593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0.2%
영·유아동반자	1,021	1,065	1,006	976	960	943	-1.52%
구성비	3.3%	3.5%	3.4%	3.3%	3.2%	3.1%	-1.34%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 ■ 읍·면별 영·유아동반자 현황

- 임실군 읍면별 영·유아동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임실읍이 383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인구대비 5.2%로 영·유아동반자 거주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3> 읍·면별 영·유아동반자 인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영·유아동반자수	구성비	그래프																										
임실읍	7,405	383	5.2%	<table border="1"> <caption>읍·면별 영·유아동반자 인구 (명)</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인구</th> </tr> </thead> <tbody> <tr><td>임실읍</td><td>383</td></tr> <tr><td>청용면</td><td>33</td></tr> <tr><td>운암면</td><td>32</td></tr> <tr><td>신평면</td><td>51</td></tr> <tr><td>성수면</td><td>39</td></tr> <tr><td>오수면</td><td>97</td></tr> <tr><td>신평면</td><td>48</td></tr> <tr><td>삼계면</td><td>30</td></tr> <tr><td>관촌면</td><td>103</td></tr> <tr><td>강진면</td><td>61</td></tr> <tr><td>덕치면</td><td>29</td></tr> <tr><td>지사면</td><td>37</td></tr> </tbody> </table>	구분	인구	임실읍	383	청용면	33	운암면	32	신평면	51	성수면	39	오수면	97	신평면	48	삼계면	30	관촌면	103	강진면	61	덕치면	29	지사면	37
구분	인구																													
임실읍	383																													
청용면	33																													
운암면	32																													
신평면	51																													
성수면	39																													
오수면	97																													
신평면	48																													
삼계면	30																													
관촌면	103																													
강진면	61																													
덕치면	29																													
지사면	37																													
청용면	1,515	33	2.2%																											
운암면	1,828	32	1.8%																											
신평면	1,762	51	2.9%																											
성수면	1,852	39	2.1%																											
오수면	4,367	97	2.2%																											
신평면	1,496	48	3.2%																											
삼계면	1,684	30	1.8%																											
관촌면	3,838	103	2.7%																											
강진면	1,797	61	3.4%																											
덕치면	1,306	29	2.2%																											
지사면	1,421	37	2.6%																											

자료 : 임실군 통계연보(2016)

라. 임실군 교통약자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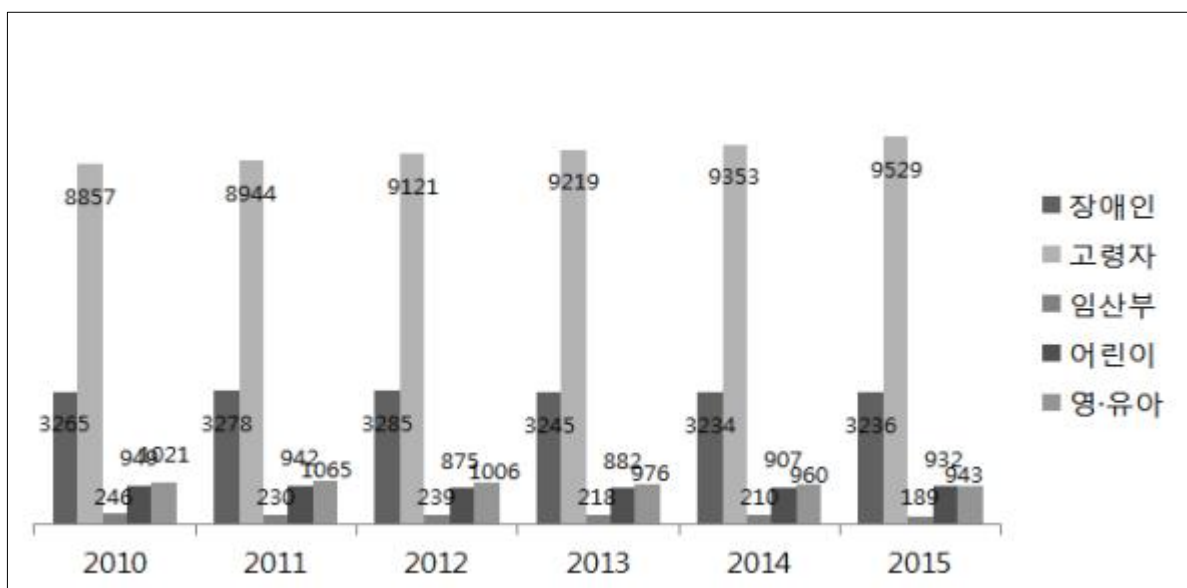
- 임실군 교통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4,338명에서 2015년 14,829명으로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2015년 전체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은 48.99%로 전국의 총인구대비 교통약자 비율인 25.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고령자가 총인구 대비 31.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임실군 교통약자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고령자를 제외한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산부의 감소율(-5.01%)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24> 임실군 장애인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임실군 인구	30,593	30,789	29,956	29,739	29,966	30,271	0.2%	
교통약자	장애인	3,265	3,278	3,285	3,245	3,234	3,236	-0.18%
	고령자	8,857	8,944	9,121	9,219	9,353	9,529	1.47%
	임산부	246	230	239	218	210	189	-5.01%
	어린이	949	942	875	882	907	932	-0.29%
	영·유아	1,021	1,065	1,006	976	960	943	-1.52%
	계	14,338	14,459	14,526	14,540	14,664	14,829	0.68%
전체인구대비 교통약자구성비	46.87%	46.96%	48.49%	48.89%	48.94%	48.99%	-	

<그림 2-5> 임실군 교통약자 추이



### 3. 장래 교통약자 수 예측

#### 가. 인구수 예측

##### ■ 계획인구 추정

- 인구지표는 토지이용계획, 관광계획, 사회복지계획, 교통계획 등 각종 부문별 계획의 개발지표 설정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지표로서, 지역의 성장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
- 인구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량분석을 활용,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안과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본 계획에서의 인구 추정 기본 방향임
- 본 계획에서는 과거 인구의 증감 추세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추정모형으로 자연적 증감분을 예측하고, 여기에 임실군의 대규모 계획성과에 따른 사회적 증감분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인구 증가분을 제시하고자 함
- 인구추정모형은 과거 인구추세를 이용한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지수함수법, 최소자승법 등 4가지 인구추정모형을 활용함
  - 등차급수법은 인구추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며, 안정된 인구증가율을 가진 도시에 적합하고 인구변화가 안정된 지방중소도시에 적합함
  - 등비급수법은 인구증가 비율이 일정할 때 적용하며, 신흥공업도시와 같이 급성장도시에 적합한 모형임
  - 지수함수법은 인구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원리에 의한 방법이며, 짧은 기간 및 순간단위의 변화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최소자승법은 인구증감의 변화가 심한 도시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임실군의 도시 형태를 어떠한 한 특징만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의 4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 인구추정을 실시한 뒤 이를 평균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을 취하였음
- 자연증가분에 대한 인구추정 결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임실군 도시계획 등의 각종 외부요인 없이 과거 추세만으로 예측한 인구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7년 61,091명, 2021년 61,275명으로 추정되었음

<표 2-25> 인구추정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차급수법	30,144	30,080	30,016	29,952	29,889
등비급수법	30,143	30,079	30,016	29,952	29,889
지수함수법	30,143	30,079	30,016	29,952	29,889
최소자승법	29,667	29,544	29,421	29,298	29,176
평균	30,024	29,946	29,867	29,789	29,711

### 나. 임실군 교통약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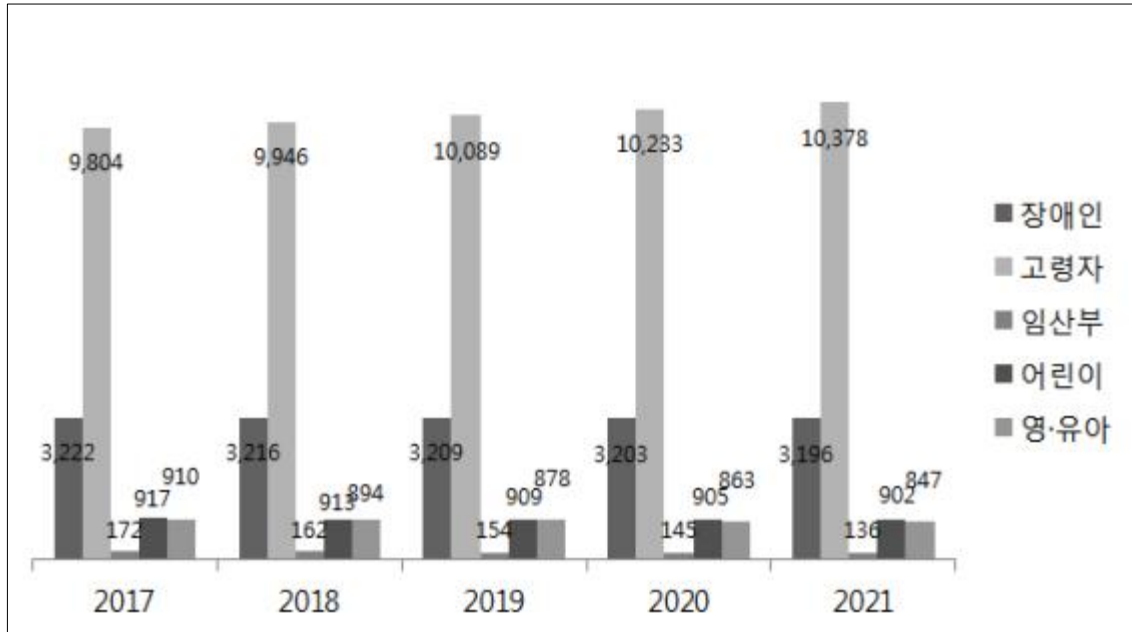
- 임실군의 2010년~2015년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2017년~2021년까지의 인구예측을 해본 결과 목표연도인 2021년 임실군 인구는 29,711명이며, 교통약자 인구는 15,459명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인구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52.03%의 비율로 분석됨
  - 이는 고령자 인구수 증가와 임신부, 어린이,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의 사회적 추세에 기인함

<표 2-27> 임실군 장래 교통약자 수 예측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가율	
임실군 인구	30,024	29,946	29,867	29,789	29,711	-0.26%	
교통약자	장애인	3,222	3,216	3,209	3,203	3,196	-0.20%
	고령자	9,804	9,946	10,089	10,233	10,378	1.43%
	임산부	172	162	154	145	136	-5.70%
	어린이	917	913	909	905	902	-0.41%
	영·유아	910	894	878	863	847	-1.78%
	계	15,025	15,131	15,239	15,349	15,459	0.71%
전체인구대비 교통약자구성비	50.04%	50.53%	51.02%	51.53%	52.03%		

<그림 2-6> 입실군 장래 교통약자 수 예측



# Ⅲ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및 만족도

1.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2. 이용만족도조사



## 1.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 가. 개요

#### 1) 조사개요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 정도를 평가함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물은 크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도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통수단 : 일반버스, 저상버스, 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 임실군의 교통수단의 경우 버스는 현재 일반버스만 해당하며, 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은 임실군 관할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 따라서 여객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버스정류장만 점검 대상이며, 도로의 경우는 보도 및 횡단보도만 해당사항이 있음(보행자 지하도는 현재 없음)

<표 3-1> 이동편의시설 조사항목 및 조사대상

구분		대상시설	조사 방법
교통수단	버스	○ 운수업체별 버스노선 - 임순여객 : 농어촌버스(일반형) 38대(예비차 포함)	전수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 3대	전수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임실공용터미널, 오수공용버스정류장, 강진공용버스터미널, 청웅터미널, 관촌터미널, 임실역	전수
	버스정류장	○ 임실군 터미널에 인접한 버스정류장 28개소	표본
도로시설	보도 및 횡단보도	○ 주요도시계획도로(12m이상 도로)	표본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대상 조사	표본

## 2) 조사 시기 및 기준

### ■ 조사시기

- 본 조사 : 2017년 4월 20일 ~ 2017년 4월 22일
- 보완 조사 : 2017년 5월 8일 ~ 2017년 5월 9일

### ■ 조사기준 설정

- 본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4.08.07.)”에서 제시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음

### ■ 조사범위

- 조사 대상지점 : 전라북도 임실군

## 3)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종류

### ■ 교통수단

#### ■ 조사범위

- 임실군의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38대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사 종류는 다음과 같음

<표 3-2>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조사 종류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농어촌버스(저상형)	○	○	○	○		○		○	○	
	농어촌버스(일반형)	○	○	○	○		○		○	○	
	농어촌버스(좌석형)	○	○	○	○		○			○	
	마을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 ■ 조사대상 및 방법

- 버스의 경우 군 관내 인허가를 가진 버스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표 3-3> 교통수단 조사대상

구분		대상시설	조사방법
교통수단	버스	○ 운수업체별 버스노선(67개 노선) - 임순여객 : 농어촌버스(일반형) 38대	직원 및 조사원 현장조사
	기타수단	○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 3대	직원 및 조사원 현장조사

■ 여객시설

▣ 조사범위

-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조사범위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되면 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4>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설치종류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	안내시설			기타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역사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조사대상 및 방법

- 군 내에 위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6개소), 버스정류장(28개소)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조사하였음

<표 3-5> 여객시설 조사대상

구분		대상시설	조사방법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임실공용터미널, 오수공용버스정류장, 강진공용버스 터미널, 청웅터미널, 관촌터미널, 임실역	직원 및 조사원 현장조사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장 부근 28개소	직원 및 조사원 현장조사

■ 도로(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종류

▣ 조사범위

- 군 내에 위치한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횡단보도 등의 보행 환경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음

<표 3-6> 도로(보행환경) 조사종류

교통수단 \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 로	○	○	○	○	○
준용도로	○	○	○	○	○

▣ 조사대상 및 방법

- 도로(보행환경)의 조사대상 및 기준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국토교통부)에 따라 여객시설 주변 출입구에서 버스정류장 간을 조사 대상으로 함
-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은 보도, 횡단보도, 육교, 음향신호기 등이 포함

<표 3-7> 도로(보행환경) 조사대상

구 분		대상시설	조사 방법
도로 (보행 환경)	보도	○ 버스터미널 부근 도시계획도로(12m이상 도로)	직원 및 조사원 현장 조사
	횡단보도	○ 주요 도시계획도로(12m이상 도로) 23개	
	음향신호기	○ 주요 도시계획도로(12m이상 도로) 23개	

나.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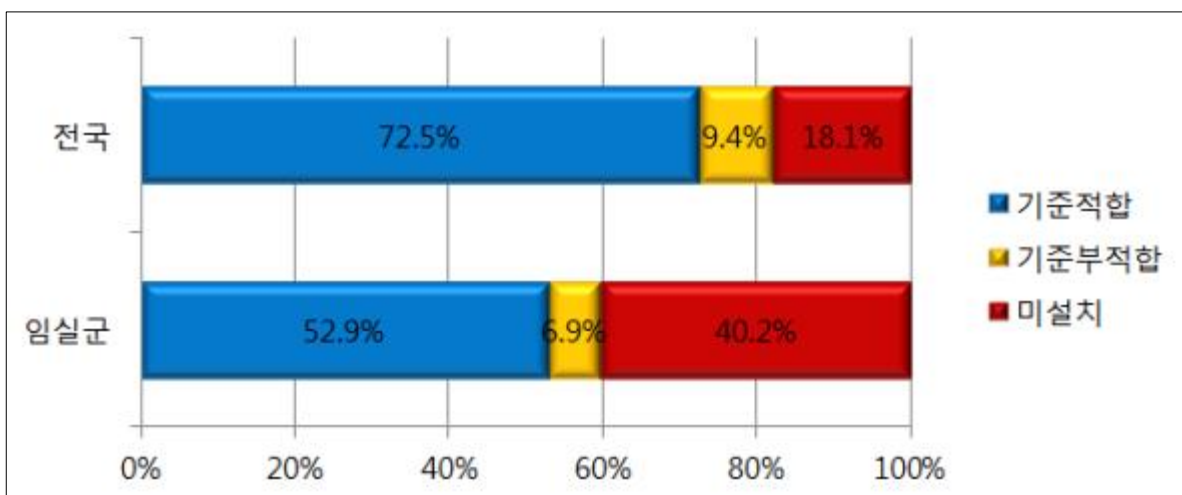
1)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종합

- 임실군 전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52.9%이며 교통수단 46.8%, 여객시설 41.7%, 도로(보행환경) 70.3%
- 임실군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의 기준적합 설치율 72.5%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상태임

<표 3-8> 임실군 및 전국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종합

구 분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교통수단	임실군	46.8%	4.8%	48.4%
	전국	77.4%	7.0%	15.6%
여객시설	임실군	41.7%	11.5%	46.9%
	전국	67.8%	8.9%	23.3%
도로 (보행환경)	임실군	70.3%	4.3%	25.4%
	전국	72.2%	12.3%	15.5%
전체평균	임실군	52.9%	6.9%	40.2%
	전국	72.5%	9.4%	18.1%

<그림 3-1> 임실군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비교



2) 교통수단

- (운행실태) 현재 임실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버스대수는 총 38대로 조사되었으며, 운영 중인 버스는 4종류의 모델로 38대 모두가 운행 중
- (안내시설) 임실군 농어촌버스 총 38대 모두 버스에서 안내방송을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버스 행선지 표시는 모든 차량의 전면 및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전광판이 미설치되어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표 3-9> 임실군 농어촌버스 안내시설 항목별 설치율

구분		평균	자동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임실군 농어촌버스	기준적합	33.3%	0.0%	0.0%	100.0%
	기준부적합	0.0%	0.0%	0.0%	0.0%
	미설치	66.7%	100.0%	100.0%	0.0%

<그림 3-2> 행선지표시(정면)



<그림 3-3> 행선지표시(후면)



- (내부시설) 모든 버스의 승강구는 유효폭이 적절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질로 조사
  - 휠체어 승강설비는 미설치, 교통약자용 좌석은 이름표로 구분이 되어있어 교통약자용 좌석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표 3-10> 임실군 농어촌버스 내부시설 항목별 설치율

구분		평균	승강구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임실군 농어촌버스	기준적합	33.3%	100.0%	0.0%	0.0%
	기준부적합	33.3%	0.0%	0.0%	100.0%
	미설치	33.3%	0.0%	100.0%	0.0%

<그림 3-4> 승강구



<그림 3-5> 교통약자용 좌석



- ❖ (기타시설) 임실군 관내 버스의 두 차종이 수직손잡이가 2~3열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차종에 대해 지름 3cm 이내인 것으로 조사

<표 3-11> 임실군 농어촌버스 내부시설 항목별 설치율

구분		평균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 가능 표시
임실군 농어촌버스	기준적합	50.0%	100.0%	0.0%
	기준부적합	0.0%	0.0%	0.0%
	미설치	50.0%	0.0%	100.0%

<그림 3-6> 수직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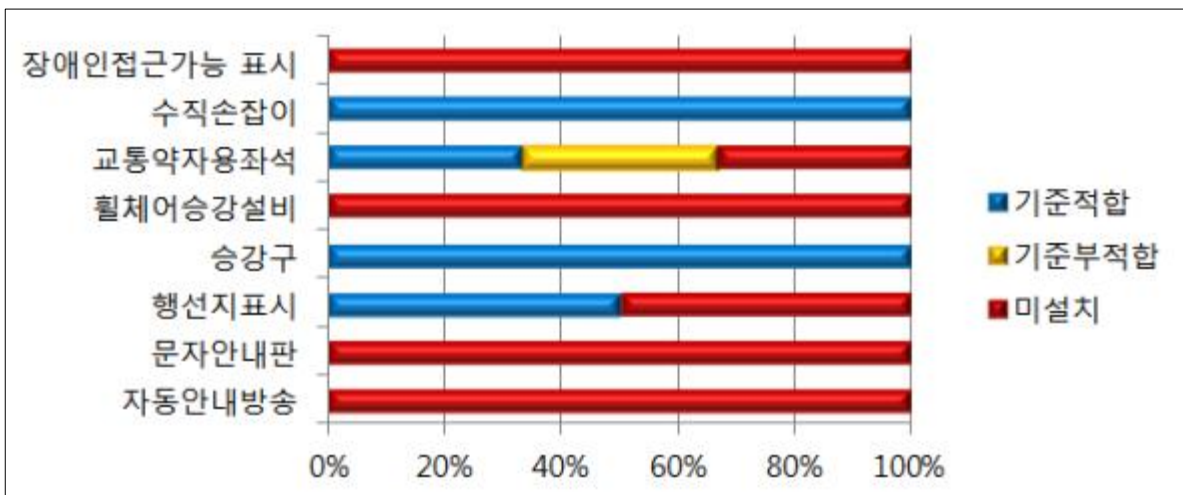


- ❖ (농어촌버스 종합) 임실군 버스 전체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46.8%로 나타났으며, 기준부적합 설치율은 4.8%, 미설치율은 48.4%
-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3대 모두 내부시설 100%가 적합이며 휠체어 승강기와 휠체어전용공간 모두 설치됨

<표 3-12> 임실군 농어촌버스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구분	분류	세부항목	법적기준		미설치
			적합	부적합	
종합평균			46.8%	4.8%	48.4%
안내 시설	자동안내 방송	명확한 음량 및 음색	0.0%	0.0%	100.0%
		국어와 영어사용	0.0%	0.0%	100.0%
	문자안내판	차량 내부설치 및 시인성 확보	0.0%	0.0%	100.0%
		한글과 영문표기	0.0%	0.0%	100.0%
	행선지표시	차량외부표시(정면)	100.0%	0.0%	0.0%
		강한 햇빛 및 야간에 식별 가능한 소재 (예- LED방식의 안내판)	0.0%	0.0%	100.0%
항목평균			16.7%	0.0%	83.3%
내부 시설	승강구	유효폭 0.8m 이상	100.0%	0.0%	0.0%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질	100.0%	0.0%	0.0%
		계단코 식별가능(다른색상)	100.0%	0.0%	0.0%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자동경사판 설치여부	0.0%	0.0%	100.0%
	교통약자용 좌석	전체좌석의 1/3이상 설치	0.0%	100.0%	0.0%
		약자용 좌석 안내판	100.0%	0.0%	0.0%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	0.0%	0.0%	100.0%
항목평균			57.1%	14.3%	28.6%
기타	수직손잡이	설치유무(2열 또는 3열마다 설치)	100.0%	0.0%	0.0%
		지름 3cm내외	100.0%	0.0%	0.0%
	장애인접근 가능 표시	휠체어 사용자 접근가능 표시	0.0%	0.0%	100.0%
	항목평균			66.7%	0.0%

<그림 3-7> 임실군 농어촌버스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3) 여객시설

#### ■ 여객터미널

- (현황) 임실군에는 임실공용버스터미널, 오수공용버스정류장, 강진공용버스터미널, 청웅버스터미널, 관촌버스터미널, 임실역 등의 여객터미널 6개소가 있음
- (수평이동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오수공용버스정류장과 임실역이 75.0%, 강진공용버스터미널, 청웅버스터미널 등은 모두 0%임

<표 3-13> 여객터미널 수평이동시설 항목별 설치율

구분		평균	보행 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통 로
임실공용 터미널	기준적합	50.00%	100.0%	100.0%	0.0%	0.0%
	기준부적합	25.00%	0.0%	0.0%	0.0%	100.0%
	미설치	25.00%	0.0%	0.0%	100.0%	0.0%
오수공용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75.00%	100.0%	100.0%	0.0%	10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25.00%	0.0%	0.0%	100.0%	0.0%
강진공용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0.00%	0.0%	0.0%	0.0%	0.0%
	기준부적합	25.00%	0.0%	100.0%	0.0%	0.0%
	미설치	75.00%	100.0%	0.0%	100.0%	100.0%
청웅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0.00%	0.0%	0.0%	0.0%	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100.00%	100.0%	100.0%	100.0%	100.0%
관촌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50.00%	100.0%	100.0%	0.0%	0.0%
	기준부적합	25.00%	0.0%	0.0%	0.0%	100.0%
	미설치	25.00%	0.0%	0.0%	100.0%	0.0%
임실역	기준적합	75.00%	100.0%	100.0%	0.0%	10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25.00%	0.0%	0.0%	100.0%	0.0%

<그림 3-8> 주출입구-임실공용버스터미널



<그림 3-9> 주출입구-임실역



- ❖ (위생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임실공용버스터미널, 오수공용버스정류장, 관촌버스터미널, 임실역 등은 75.0%로 높은 편이나, 강진공용버스터미널, 청용버스터미널 등은 0%임

<표 3-14> 여객터미널 위생시설 항목별 설치율

구분		평 균	장애인 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임실공용 터미널	기준적합	75.00%	100.0%	100.0%	100.0%	0.0%
	기준부적합	25.00%	0.0%	0.0%	0.0%	100.0%
	미설치	0.00%	0.0%	0.0%	0.0%	0.0%
오수공용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75.00%	100.0%	100.0%	100.0%	0.0%
	기준부적합	25.00%	0.0%	0.0%	0.0%	100.0%
	미설치	0.00%	0.0%	0.0%	0.0%	0.0%
강진공용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0.00%	0.0%	0.0%	0.0%	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100.00%	100.0%	100.0%	100.0%	100.0%
청용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0.00%	0.0%	0.0%	0.0%	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100.00%	100.0%	100.0%	100.0%	100.0%
관촌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75.00%	100.0%	100.0%	0.0%	10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25.00%	0.0%	0.0%	100.0%	0.0%
임실역	기준적합	75.00%	100.0%	100.0%	0.0%	10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25.00%	0.0%	0.0%	100.0%	0.0%

<그림 3-10> 장애인전용화장실-임실공용버스터미널(대변기, 소변기)



■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 터미널 내 승강장의 설치율이 0.0%

<표 3-15> 여객터미널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 항목별 설치율

구분		평 균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매표소 및 판매기	승강장
임실공용 터미널	기준적합	25.00%	0.0%	0.0%	100.0%	0.0%
	기준부적합	25.00%	0.0%	100.0%	0.0%	0.0%
	미설치	50.00%	100.0%	0.0%	0.0%	100.0%
오수공용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50.00%	100.0%	0.0%	100.0%	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50.00%	0.0%	100.0%	0.0%	100.0%
강진공용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25.00%	0.0%	0.0%	100.0%	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75.00%	100.0%	100.0%	0.0%	100.0%
청웅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0.00%	0.0%	0.0%	0.0%	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100.00%	100.0%	100.0%	100.0%	100.0%
관촌 버스터미널	기준적합	25.00%	0.0%	0.0%	100.0%	0.0%
	기준부적합	0.00%	0.0%	0.0%	0.0%	0.0%
	미설치	75.00%	100.0%	100.0%	0.0%	100.0%
임실역	기준적합	50.00%	100.0%	0.0%	100.0%	0.0%
	기준부적합	25.00%	0.0%	100.0%	0.0%	0.0%
	미설치	25.00%	0.0%	0.0%	0.0%	100.0%

<그림 3-11> 매표소-임실공용버스터미널



<그림 3-12> 짐차블록-임실역



<그림 3-13> 매표소-강진공용터미널



<그림 3-14> 승강장-관촌버스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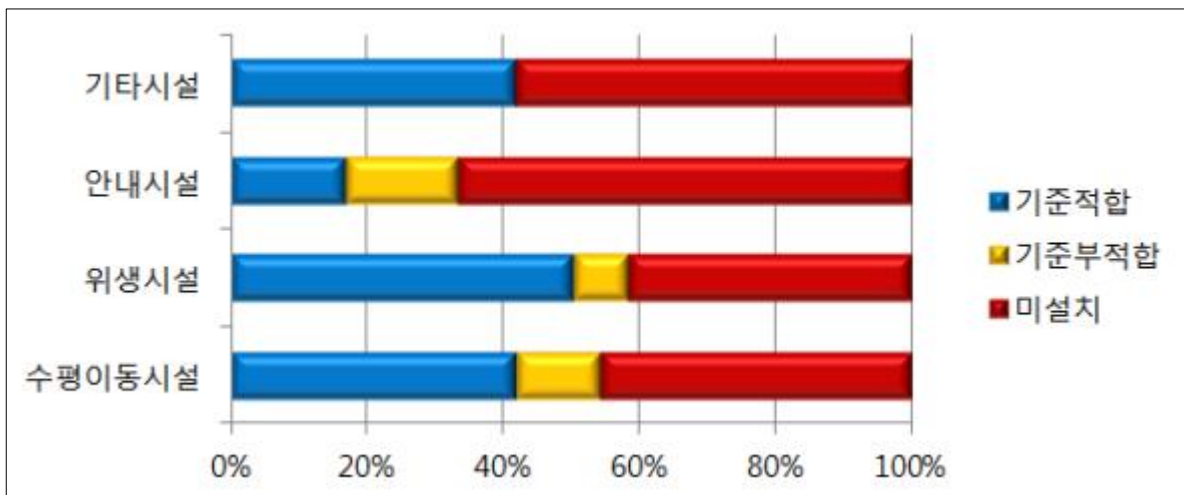


❖ (여객터미널 종합) 여객터미널의 종합적 설치율은 기준적합 37.5%로 적합도가 낮게 분석

<표 3-16> 여객터미널 항목별 설치율

항 목	법 적 기 준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합계	
<b>종 합 평 균</b>		37.5%	9.4%	53.1%	100.0%	
수평이동시설	보행접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66.7%	0.0%	33.3%	100.0%
	주출입구	출입구 : 유효폭 0.9m이상, 높이 2.1m이상	66.7%	16.7%	16.7%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폭 3.3m이상, 길이 5.0m이상,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0.0%	0.0%	100.0%	100.0%
	통로	유효폭 2.0m이상, 높이차 없는 바닥면	33.3%	33.3%	33.3%	100.0%
	<b>항목평균</b>		41.7%	12.5%	45.8%	100.0%
위생시설	장애인전용화장실	남성용·여성용 각 1개소 설치, 접근용이 지점에 설치	66.7%	0.0%	33.3%	100.0%
	대변기	바닥면적 1.4mX1.4m, 수평손잡이 설치	66.7%	0.0%	33.3%	100.0%
	소변기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33.3%	0.0%	66.7%	100.0%
	세면대	높이 0.65m~0.85m이하 설치, 수평손잡이 설치	33.3%	33.3%	33.3%	100.0%
	<b>항목평균</b>		50.0%	8.3%	41.7%	100.0%
안내시설	점자블록	점형·선형블록 설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설치	33.3%	0.0%	66.7%	100.0%
	유도 및 안내시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경우 점자안내판 설치	0.0%	33.3%	66.7%	100.0%
	<b>항목평균</b>		16.7%	16.7%	66.7%	100.0%
기타시설	매표소, 판매기	높이 0.7m~0.9m이하 설치	83.3%	0.0%	16.7%	100.0%
	승강장	안전펜스 및 점형블록 설치	0.0%	0.0%	100.0%	100.0%
	<b>항목평균</b>		41.7%	0.0%	58.3%	100.0%

<그림 3-15> 임실군 여객터미널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버스정류장

- (현황) 임실군 터미널에서 근접한 버스 정류장 28개소에 대해 보도, 점자 블록, 안내시설, 대기시설을 조사

<그림 3-16> 보도연석



<그림 3-17> 안내판(버스시간표)



<그림 3-18> 버스정류장(벽돌형)



<그림 3-19> 대기시설(개방형)



<그림 3-20> 대기시설(셸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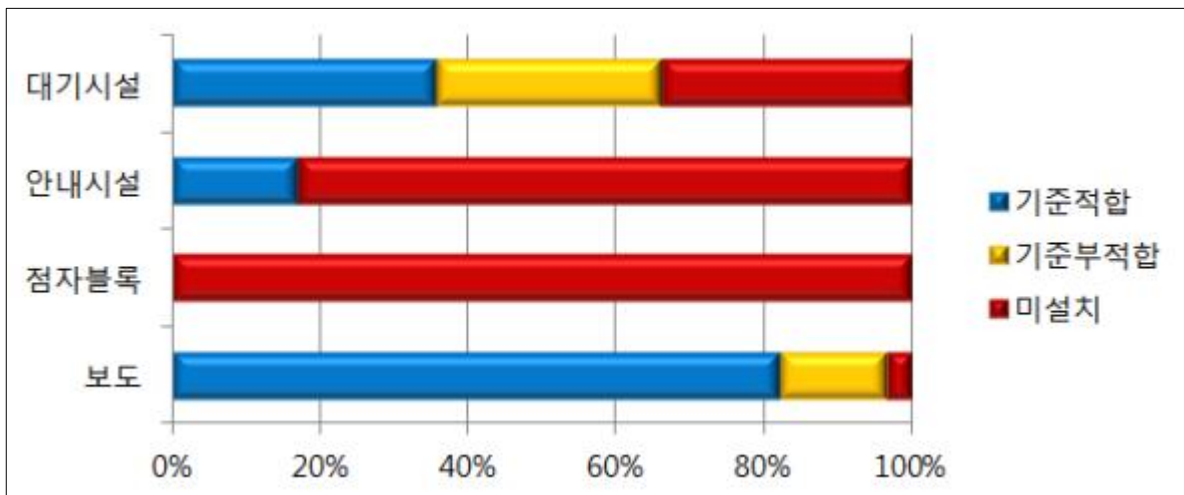


❖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종합) 임실군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의 경우  
 기준적합율이 27.4%임

<표 3-17> 버스정류장 종합

구분	법적기준	개소수			설치율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종합평균		10.8	3.1	18.2	27.4%	12.9%	59.4%
보도	연석높이 15cm 이하	23	4	1	82.1%	14.3%	3.6%
	보도폭	9	8	11	32.1%	28.6%	39.3%
	항목평균	16	6	6	57.1%	21.4%	21.4%
점자블록	점형블록	0	0	28	0.0%	0.0%	100.0%
	선형블록	0	0	28	0.0%	0.0%	100.0%
	항목평균	0	0	28	0.0%	0.0%	100.0%
안내시설	안내판위치(1.5m내외)	14	0	13	50.0%	0.0%	46.4%
	점자안내	0	0	28	0.0%	0.0%	100.0%
	음성안내	0	0	28	0.0%	0.0%	100.0%
	항목평균	4.7	0	23.0	16.7%	0.0%	82.1%
대기시설	대기시설(Shelter)유무	18	3	7	64.3%	10.7%	25.0%
	휠체어활동공간	2	14	12	7.1%	50.0%	42.9%
	항목평균	10	8.5	9.5	35.7%	30.4%	33.9%

<그림 3-21> 임실군 버스정류장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4) 보행환경

##### ■ 보행도로

❖ (보도 현황) 임실군내 터미널 부근의 12m이상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의 유효폭,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블라드를 대상으로 조사

<그림 3-22> 평탄성



<그림 3-23> 연석높이



<그림 3-24> 보행장애물



<그림 3-25> 턱낮추기



<그림 3-26> 턱낮추기2



<그림 3-27>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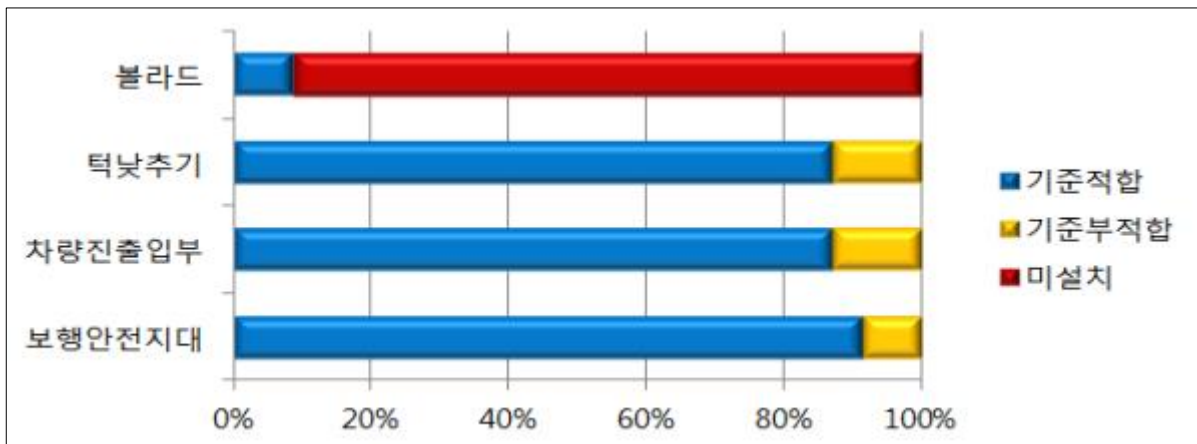


■ (보도 이동편의시설 종합) 보도 이동편의시설의 경우 기준적합 설치율은 70.3%, 기준 부적합 설치율은 4.3%, 미설치율은 25.4%

<표 3-18> 보도부문 항목별 설치 개소수 및 설치율

항 목	법 적 기 준	개소수			설치율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b>종합평균</b>		16.2	1.0	5.9	70.3%	4.3%	25.4%
보행 안전지대	평탄성	21	2	0	91.3%	8.7%	0.0%
	연석높이 25cm이하	21	2	0	91.3%	8.7%	0.0%
	보행장애물	23	0	0	100.0%	0.0%	0.0%
	<b>항목평균</b>	21.7	1.3	0.0	94.2%	5.8%	0.0%
차량 진출입부	턱낮추기유무	20	3	0	87.0%	13.0%	0.0%
	보도높이유지	20	3	0	87.0%	13.0%	0.0%
	연석구분	23	0	0	100.0%	0.0%	0.0%
	<b>항목평균</b>	21.0	2.0	0.0	91.3%	8.7%	0.0%
턱낮추기	연석높이 2cm이하	20	3	0	87.0%	13.0%	0.0%
	연석경사로폭 0.9m이상	23	0	0	100.0%	0.0%	0.0%
	기울기 1/12이하	23	0	0	100.0%	0.0%	0.0%
	집형블록	17	0	6	73.9%	0.0%	26.1%
	선형블록	17	0	6	73.9%	0.0%	26.1%
	<b>항목평균</b>	20.0	0.6	2.4	87.0%	2.6%	10.4%
블라드	높이 0.8m~1.0m	2	0	21	8.7%	0.0%	91.3%
	간격 1.5m내외	2	0	21	8.7%	0.0%	91.3%
	<b>항목평균</b>	2.0	0.0	21.0	8.7%	0.0%	91.3%

<그림 3-28> 임실군 보행도로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현황) 임실군내 터미널 부근의 12m이상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음성안내시스템, 신호등, 교통섬을 대상으로 조사

<그림 3-29> 점형블록



<그림 3-30> 교통섬 블록

<그림 3-31> 잔여시간표시기



<그림 3-32> 음향신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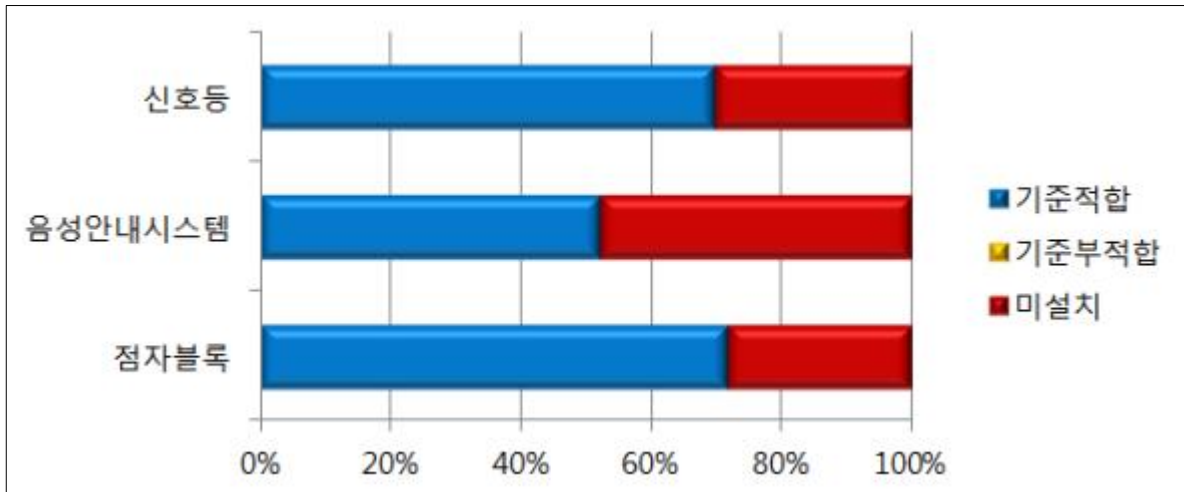


■ (횡단보도 이동편의시설 종합) 임실군 횡단보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기준적합 64.4%, 기준부적합 0.0%, 미설치 35.6%임

<표 3-19> 횡단보도부문 항목별 설치 개소수 및 설치율

항목	법적기준	개소수			설치율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미설치
<b>종합평균</b>		13.6	0.0	7.6	64.4%	0.0%	35.6%
점자블록	점형블록	17	0	6	73.9%	0.0%	26.1%
	선형블록	17	0	6	73.9%	0.0%	26.1%
	교통섬 점자블록	4	0	2	66.7%	0.0%	33.3%
	<b>항목평균</b>	12.7	0.0	4.7	71.5%	0.0%	28.5%
음성안내시스템	음향신호기 설치	12	0	11	52.2%	0.0%	47.8%
	신호기앞 점형블록 설치	12	0	11	52.2%	0.0%	47.8%
	<b>항목평균</b>	12.0	0.0	11.0	52.2%	0.0%	47.8%
신호등	보행신호등 설치	16	0	7	69.6%	0.0%	30.4%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16	0	7	69.6%	0.0%	30.4%
	<b>항목평균</b>	16.0	0.0	7.0	69.6%	0.0%	30.4%

<그림 3-33> 임실군 횡단보도 실태조사 항목별 비교



## 2. 이용만족도조사

### 가. 개요

#### ■ 조사의 목적

-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이동 편의시설 이용 시 느끼는 불편사항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

#### ■ 조사대상 및 방법

- ❖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조사 대상은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시행함
- ❖ 조사방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경우 임실군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협회 임실군 지부 등 관련 단체를 통하여 1:1 개별 설문조사를 시행함
- ❖ 본 조사는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임실군 전 지역에서 실시함

#### ■ 조사의 내용

<표 3-20> 교통만족도 조사 내용

설문대상자	항목	세부내용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어린이, 비장애인	응답자 기본정보	거주지, 연령, 교통약자구분, 장애정도
	응답자 일반사항	신체적어려움, 외출횟수, 외출시간대, 이용교통수단종류, 외출의 주된목적,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 외출시 불편함
	걸어다닐 때 만족도	보도 이용 만족도, 육교 이용 만족도, 횡단보도 이용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여객시설 만족도	버스정류장 이용 및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버스터미널의 이용 및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여객시설 만족도
	교통수단 만족도	일반버스 이용 만족도, 장애인콜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이용 만족도, 전반적 교통수단 만족도
	종합평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보행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우선추진교통약자정책, 자유의견

■ 만족도 점수 산출 방법

■ 만족도는 5간척도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

- 매우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불만족: 1점

■ 만족도 평균값 산출: 만족도 평균값=(응답자수×만족도 점수)/응답자수 합

■ 응답자 현황

■ 전체 설문 응답자 313인 중 장애인 50명(16.0%), 임산부 22명(7.0%), 고령자 78명(24.9%), 어린이 27명(8.6%), 비장애인 136명(43.5%)

- 교통약자 99명(56.5%), 일반인 136명(43.5%)

<표 3-21>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항목	응답수	비율	구분	항목	응답수	비율
성별	남성	118	37.7%	거주지	임실읍	153	48.9%
	여성	195	62.3%		청용면	24	7.7%
연령	20세 미만	43	13.7%		운암면	9	2.9%
	20세~30세 미만	15	4.8%		신평면	5	1.6%
	30세~40세 미만	57	18.2%		성수면	26	8.3%
	40세~50세 미만	49	15.7%		오수면	20	6.4%
	50세~60세 미만	49	15.7%		신타면	4	1.3%
	60세 이상	100	31.9%		삼계면	4	1.3%
교통약자 구분	지체장애인	10	3.2%		관촌면	28	8.9%
	시각장애인	4	1.3%		강진면	26	8.3%
	청각장애인	5	1.6%	덕치면	12	3.8%	
	기타장애인(복합장애인)	31	9.9%	지사면	2	0.6%	
	임산부	22	7.0%				
	고령자	78	24.9%				
	어린이	27	8.6%				
	비장애인	136	43.5%				

## 나. 설문조사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사항

#### ■ 문1. 걷거나 차량,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할 때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n=311)

- 전체 응답자 중 교통약자의 경우 걷거나 차량,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할 때 느끼는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52.5%로 일반인(9.7%)보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 걷거나 교통수단 이용 시 신체적 어려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합계
교통약자	명	93	84	177
	%	52.5%	47.5%	100.0%
일반인	명	13	121	134
	%	9.7%	90.3%	100.0%

#### ■ 문2.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여기십니까?(n=295)

- 교통약자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57.4%이며, 일반인은 13.5%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신체적 어려움 수준

(단위 : 명, %)

구분		1	2	3	4	합계
교통약자	명	72	34	37	26	169
	%	42.6%	20.1%	21.9%	15.4%	100.0%
일반인	명	109	11	5	1	126
	%	86.5%	8.7%	4.0%	0.8%	100.0%

- 주 : 1. 이동하는데 거의 불편함 없음  
 2.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가끔 신체적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  
 3. 이동하는데 불편하며 가끔 도움이 필요함  
 4.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함

■ 문3.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외출하십니까?(n=311)

- 교통약자의 경우 매일 외출이 34.7%로 가장 많았고, 1-2회(25.6%), 3-4회(23.9%), 5-6회(15.9%)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은 매일이 53.3%로 가장 많았고, 1-2회(17.0%), 5-6회(16.3%), 3-4회(13.3%)순으로 나타남

<표 3-24> 일주일동안 외출횟수

(단위 : 명, %)

구분		매일	5-6회	3-4회	1-2회	합계
교통약자	명	61	28	42	45	176
	%	34.7%	15.9%	23.9%	25.6%	100.0%
일반인	명	72	22	18	23	135
	%	53.3%	16.3%	13.3%	17.0%	100.0%

■ 문4.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n=313)

- 교통약자의 경우 08-10시의 외출이 45.2%로 가장 많았고, 10-12시(27.1%), 06-08시·12-14시(9.0%), 14-16시(56.1%), 16-18시(2.8%), 18-20시(1.7%)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은 08-10시의 외출이 39.0%로 가장 많았고, 06-08시(24.3%), 10-12시(20.6%), 12-14시(8.1%), 14-16시·16-18시·18-20시(2.2%), 20-22시·22-24시(0.7%)순으로 나타남

<표 3-25>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

(단위 : 명, %)

구분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합계
교통약자	명	16	80	48	16	9	5	3	0	0	177
	%	9.0%	45.2%	27.1%	9.0%	5.1%	2.8%	1.7%	0.0%	0.0%	100.0%
일반인	명	33	53	28	11	3	3	3	1	1	136
	%	24.3%	39.0%	20.6%	8.1%	2.2%	2.2%	2.2%	0.7%	0.7%	100.0%

■ 문5. 외출시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교통약자의 경우 버스 이용이 전체의 5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걸어서(36.2%), 택시(12.4%), 자가용(11.3%), 셔틀버스(7.9%), 휠체어(6.8%), 기타(6.8%), 장애인택시(0.6%)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은 자가용 이용의 비중이 47.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걸어서가 43.4%, 버스가 40.4%로 뒤를 이음

<표 3-26>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

구분		걸어서	휠체어	자가용	버스	택시	장애인택시	셔틀버스	기타	합계
교통약자	명	64	12	20	106	22	1	14	12	251
	%	36.2%	6.8%	11.3%	59.9%	12.4%	0.6%	7.9%	6.8%	141.9%
일반인	명	59	0	65	55	12	0	1	2	194
	%	43.4%	0.0%	47.8%	40.4%	8.8%	0.0%	0.7%	1.5%	142.6%

■ 문6. 외출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n=313)

- 교통약자의 경우 병원/보건소가 39.0%로 가장 높았고, 복지관 경로당이 16.4%, 학교/학원이 15.8%, 직업 또는 업무상 외출이 12.4%로 뒤를 이음
- 일반인의 외출 시 주된 목적은 직업 또는 업무상의 외출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학원이 9.6%, 친구/친척이 8.8%, 병원/보건소가 8.1%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7>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교통약자	명	22	29	69	28	2	1	6	5	8	7	177
	%	12.4%	16.4%	39.0%	15.8%	1.1%	0.6%	3.4%	2.8%	4.5%	4.0%	100.0%
일반인	명	80	2	11	13	0	12	8	4	4	2	136
	%	58.8%	1.5%	8.1%	9.6%	0.0%	8.8%	5.9%	2.9%	2.9%	1.5%	100.0%

주 : 1. 직업 또는 업무상 외출, 2. 복지관 경로당, 3. 병원 보건소, 4. 학교 학원, 5. 종교, 6. 친구 친척, 7. 상점 쇼핑, 8. 취미 오락, 9. 운동, 10. 기타

■ 문7. 외출시 주된 목적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n=313)

- 교통약자는 30분 이내가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시간 이내(26.6%), 10분 이내(14.1%), 1시간 이상(10.7%)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의 외출 시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가 49.3%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내(22.8%), 10분 이내(16.2%), 1시간 이상(11.8%)순으로 나타남

<표 3-28> 외출 시 걸리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10분이내	30분이내	1시간이내	1시간이상	합계
교통약자	명	25	86	47	19	177
	%	14.1%	48.6%	26.6%	10.7%	100.0%
일반인	명	22	67	31	16	136
	%	16.2%	49.3%	22.8%	11.8%	100.0%

■ 문8. 외출시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n=313)

- 교통약자는 불편함 없음(36.7%), 보도가 없고 턱이 많고 차가 많음(26.0%), 대중교통 이용 불편(25.4%), 기타(8.5%), 터미널 기차역 이용 불편(3.4%)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은 외출 시 불편함 없음(52.2%), 보도가 없고 턱이 많고 차가 많음(29.4%), 대중교통 이용 불편(10.3%), , 기타(6.6%)터미널 기차역 이용 불편(1.5%)순으로 나타남

<표 3-29> 외출 시 불편함

(단위 : 명, %)

구분		불편함 없음	보도가 없고 차가 많음	대중교통 이용 불편	대중교통시설 이용 불편	기타	합계
교통약자	명	65	46	45	6	15	177
	%	36.7%	26.0%	25.4%	3.4%	8.5%	100.0%
일반인	명	71	40	14	2	9	136
	%	52.2%	29.4%	10.3%	1.5%	6.6%	100.0%

## 2) 걸어 다닐 때 만족도

### ■ 보도이용 만족도(n=303)

■ 임실군 보도이용 만족도는 2.91점으로 나타남

- 임산부의 만족도가 2.64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장애인과 고령자 (각 2.76점), 일반인(3.00점), 어린이(3.46점)순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유형별로 장애인 40.8%, 임산부 45.5%, 고령자 41.3%, 어린이 16.7%, 일반인 24.1%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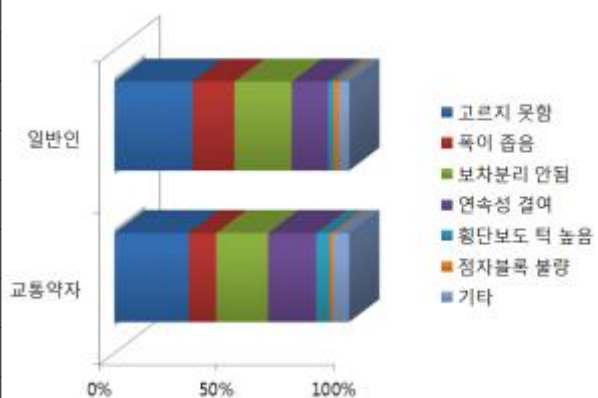
<표 3-30> 보도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0	8	21	20	0	2.76
	%	0.0%	16.3%	42.9%	40.8%	0.0%	
임산부	명	0	4	8	8	2	2.64
	%	0.0%	18.2%	36.4%	36.4%	9.1%	
고령자	명	2	13	29	27	4	2.76
	%	2.7%	17.3%	38.7%	36.0%	5.3%	
어린이	명	6	5	9	2	2	3.46
	%	25.0%	20.8%	37.5%	8.3%	8.3%	
일반인	명	3	32	66	26	6	3.00
	%	2.3%	24.1%	49.6%	19.5%	4.5%	
전체	명	11	62	133	83	14	2.91
	%	3.6%	20.5%	43.9%	27.4%	4.6%	

<표 3-31> 보도 이용 시 불만족 이유

구분	교통약자		일반인	
	명	%	명	%
고르지 못함	43	24.3	30	22.1
폭이 좁음	16	9.0	16	11.8
보차분리 안됨	30	16.9	22	16.2
연속성 결여	28	15.8	14	10.3
횡단보도 턱 높음	8	4.5	2	1.5
점자블록 불량	2	1.1	2	1.5
기타	9	5.1	4	2.9



주 : 복수응답, 불만족/매우 불만족인 경우 불만족 이유 선택

■ 횡단보도이용 만족도(n=284)

- 임실군 횡단보도 이용 만족도는 2.87점으로 나타남
  - 임산부의 만족도가 2.68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고령자(2.78점), 장애인(2.89점), 일반인(2.85점), 어린이(3.35점)순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유형별로 장애인의 33.3%, 임산부의 40.9%, 고령자의 33.8%, 어린이의 19.2%, 일반인의 29.3%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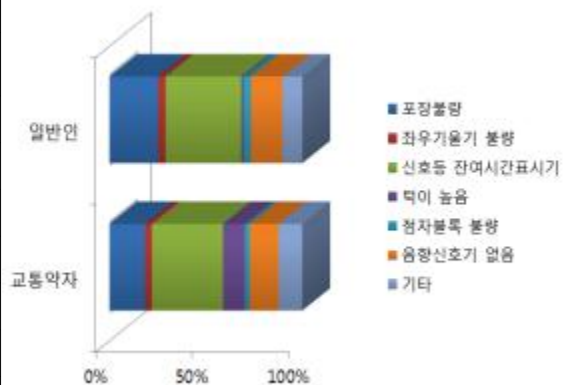
<표 3-32> 횡단보도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0	10	20	15	0	2.89
	%	0.0%	22.2%	44.4%	33.3%	0.0%	
임산부	명	0	5	8	6	3	2.68
	%	0.0%	22.7%	36.4%	27.3%	13.6%	
고령자	명	1	13	31	16	7	2.78
	%	1.5%	19.1%	45.6%	23.5%	10.3%	
어린이	명	6	4	11	3	2	3.35
	%	23.1%	15.4%	42.3%	11.5%	7.7%	
일반인	명	3	23	61	25	11	2.85
	%	2.4%	18.7%	49.6%	20.3%	8.9%	
전체	명	10	55	131	65	23	2.87
	%	3.5%	19.4%	46.1%	22.9%	8.1%	

<표 3-33> 횡단보도 이용 시 불만족 이유

구분	교통약자		일반인	
	명	%	명	%
포장 불량	21	11.9	20	14.7
좌우 기울기 불량	4	2.3	3	2.2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42	23.7	31	22.8
턱이 높음	13	7.3	1	0.7
점자블록 불량	3	1.7	3	2.2
음향신호기 없음	17	9.6	13	9.6
기타	14	7.9	8	5.9



주 : 복수응답, 불만족/매우 불만족인 경우 불만족 이유 선택

■ 전반적인 도로(보도, 횡단보도, 지하도)의 만족도(n=310)

■ 임실군 전반적인 도로(보도, 횡단보도, 지하도)에 대한 만족도는 3.10점으로 나타남

- 임실군의 교통약자에서 임산부의 만족도가 2.5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이들을 위한 도로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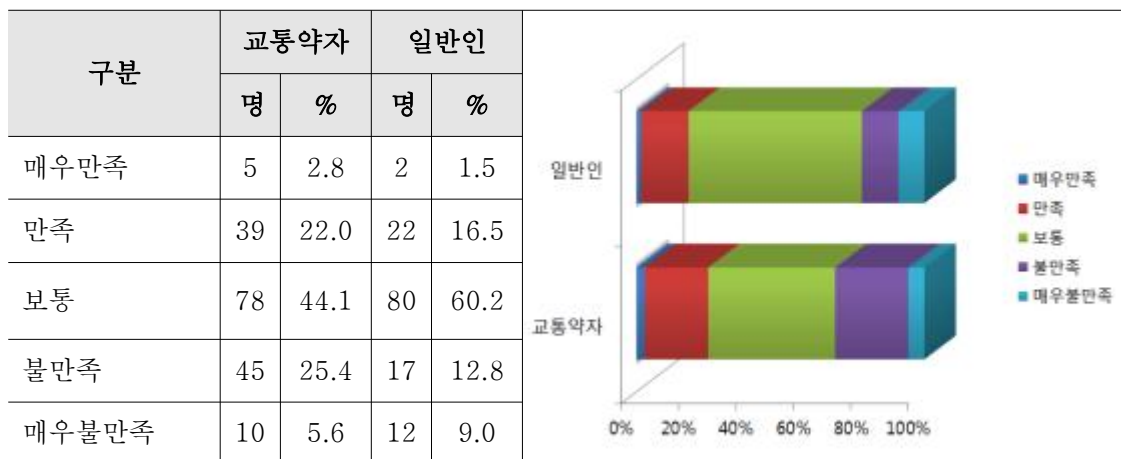
■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보통이다’ 이상이 과반수이상이고, 불만족 이하의 의견은 일반인에 비해 교통약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34> 전반적인 도로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0	10	25	14	1	2.88
	%	0.0%	20.0%	50.0%	28.0%	2.0%	
임산부	명	1	3	6	10	2	2.59
	%	4.5%	13.6%	27.3%	45.5%	9.1%	
고령자	명	1	16	35	21	5	2.83
	%	1.3%	20.5%	44.9%	26.9%	6.4%	
어린이	명	3	10	12	0	2	3.44
	%	11.1%	37.0%	44.4%	0.0%	7.4%	
일반인	명	2	22	80	17	12	2.89
	%	1.5%	16.5%	60.2%	12.8%	9.0%	
전체	명	7	61	158	62	22	2.90
	%	2.3%	19.7%	51.0%	20.0%	7.1%	

<표 3-35> 전반적인 도로 만족도(2)



3) 여객시설 만족도

■ 버스정류장이용 및 시설환경 만족도(n=266)

▣ 임실군 버스정류장이용 만족도는 2.88점으로 나타남

- 임산부의 만족도가 2.7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일반인(2.81점), 고령자(2.89점), 장애인(3.00점), 어린이(3.17점)순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유형별로 장애인 27.8%, 임산부 38.9%, 고령자 23.6%, 어린이 21.7%, 일반인 29.9%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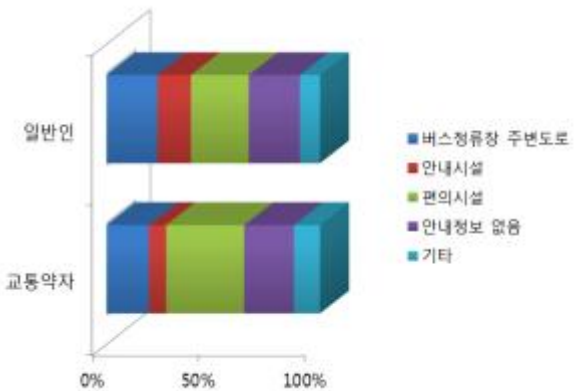
<표 3-36> 버스정류장이용 및 시설환경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1	8	17	10	0	3.00
	%	2.8%	22.2%	47.2%	27.8%	0.0%	
임산부	명	1	1	9	6	1	2.73
	%	5.6%	5.6%	50.0%	33.3%	5.6%	
고령자	명	0	14	41	12	5	2.89
	%	0.0%	19.4%	56.9%	16.7%	6.9%	
어린이	명	3	5	10	3	2	3.17
	%	13.0%	21.7%	43.5%	13.0%	8.7%	
일반인	명	0	18	64	30	5	2.81
	%	0.0%	15.4%	54.7%	25.6%	4.3%	
전체	명	5	46	141	61	13	2.88
	%	1.9%	17.3%	53.0%	22.9%	4.9%	

<표 3-37> 버스정류장이용 시 불만족 이유

구분	교통약자		일반인	
	명	%	명	%
버스정류장 주변도로	18	10.2	23	16.9
안내시설	7	4.0	15	11.0
편의시설	33	18.6	26	19.1
안내정보 없음	21	11.9	23	16.9
기타	11	6.2	9	6.6



주 : 복수응답, 불만족/매우 불만족인 경우 불만족 이유 선택

■ 버스터미널(고속, 시외)이용 및 시설환경 만족도(n=263)

▣ 임실군 버스정류장이용 만족도는 2.80점으로 나타남

- 일반인의 만족도가 2.6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고령자(2.73점), 임산부(2.80점), 장애인(3.05점), 어린이(3.10점)순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유형별로 장애인 30.8%, 임산부 35.0%, 고령자 36.6%, 어린이 35.0%, 일반인 38.1%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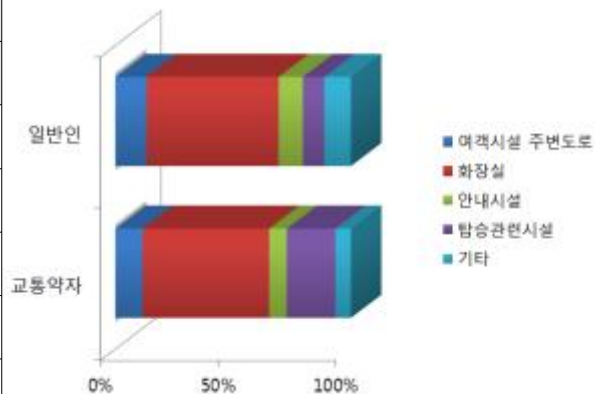
<표 3-38> 버스터미널이용 및 시설환경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0	14	13	12	0	3.05
	%	0.0%	35.9%	33.3%	30.8%	0.0%	
임산부	명	1	2	10	6	1	2.80
	%	5.0%	10.0%	50.0%	30.0%	5.0%	
고령자	명	0	14	31	19	7	2.73
	%	0.0%	19.7%	43.7%	26.8%	9.9%	
어린이	명	5	4	4	2	5	3.10
	%	25.0%	20.0%	20.0%	10.0%	25.0%	
일반인	명	2	13	55	34	9	2.69
	%	1.8%	11.5%	48.7%	30.1%	8.0%	
전체	명	8	47	113	73	22	2.80
	%	3.0%	17.9%	43.0%	27.8%	8.4%	

<표 3-39> 버스터미널이용 시 불만족 이유

구분	교통약자		일반인	
	명	%	명	%
여객시설 주변도로	14	7.9	13	9.6
화장실	65	36.7	55	40.4
안내시설	9	5.1	10	7.4
탑승관련시설	25	14.1	9	6.6
기타	8	4.5	11	8.1



주 : 복수응답, 불만족/매우 불만족인 경우 불만족 이유 선택

■ 전반적인 여객시설 만족도(n=284)

■ 임실군 전반적인 여객시설 만족도는 2.84점으로 나타남

- 일반인의 만족도가 2.75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고령자(2.77점), 임산부(2.79점), 장애인(3.07점), 어린이(3.15점)순으로 나타남

■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보통이다’이상이 절반 이상이었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만족스럽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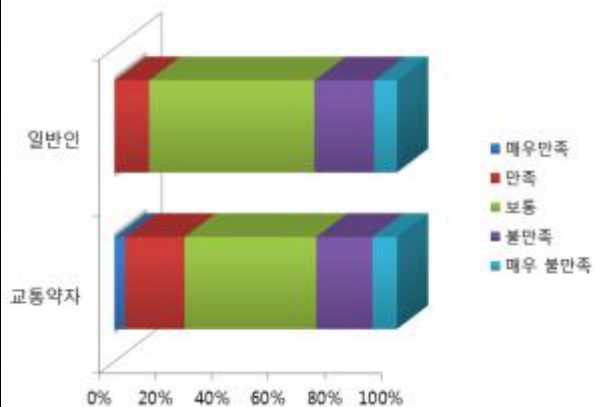
<표 3-40> 전반적인 여객시설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0	13	19	8	1	3.07
	%	0.0%	31.7%	46.3%	19.5%	2.4%	
임산부	명	1	1	11	5	1	2.79
	%	5.3%	5.3%	57.9%	26.3%	5.3%	
고령자	명	0	15	35	16	8	2.77
	%	0.0%	20.3%	47.3%	21.6%	10.8%	
어린이	명	5	5	10	3	4	3.15
	%	18.5%	18.5%	37.0%	11.1%	14.8%	
일반인	명	0	15	72	26	10	2.75
	%	0.0%	12.2%	58.5%	21.1%	8.1%	
전체	명	6	49	147	58	24	2.84
	%	2.1%	17.3%	51.8%	20.4%	8.5%	

<표 3-41> 전반적인 여객시설 만족도(2)

구분	교통약자		일반인	
	명	%	명	%
매우만족	6	3.7	0	0.0
만족	34	21.1	15	12.2
보통	75	46.6	72	58.5
불만족	32	19.9	26	21.1
매우불만족	14	8.7	10	8.1



#### 4) 교통수단 만족도

##### ■ 일반버스 이용 만족도(n=269)

▣ 임실군 일반버스 이용 만족도는 2.87점으로 나타남

- 임산부의 만족도가 2.57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일반인(2.78점), 고령자(2.80점), 장애인(3.02점), 어린이(3.44점)순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유형별로 장애인 29.3%, 임산부 37.5%, 고령자 35.2%, 어린이 16.0%, 일반인 30.2%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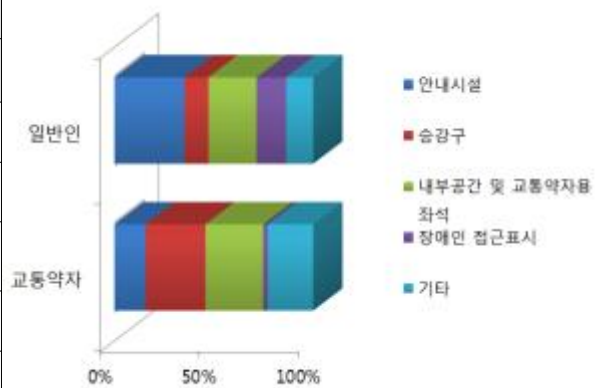
<표 3-42> 일반버스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0	13	16	12	0	3.02
	%	0.0%	31.7%	39.0%	29.3%	0.0%	
임산부	명	1	0	9	3	3	2.57
	%	6.3%	0.0%	56.3%	18.8%	18.8%	
고령자	명	0	17	29	19	6	2.80
	%	0.0%	23.9%	40.8%	26.8%	8.5%	
어린이	명	6	6	9	1	3	3.44
	%	24.0%	24.0%	36.0%	4.0%	12.0%	
일반인	명	1	15	65	27	8	2.78
	%	0.9%	12.9%	56.0%	23.3%	6.9%	
전체	명	8	51	128	62	20	2.87
	%	3.0%	19.0%	47.6%	23.0%	7.4%	

<표 3-43> 일반버스 이용 시 불만족 이유

구분	교통약자		일반인	
	명	%	명	%
안내시설	13	7.3	26	19.1
승강구	25	14.1	9	6.6
내부공간 및 교통약자용 좌석	24	13.6	18	13.2
장애인 접근표시	2	1.1	11	8.1
기타	19	10.7	10	7.4



주 : 복수응답, 불만족/매우 불만족인 경우 불만족 이유 선택

■ 장애인콜밴,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이용 만족도(n=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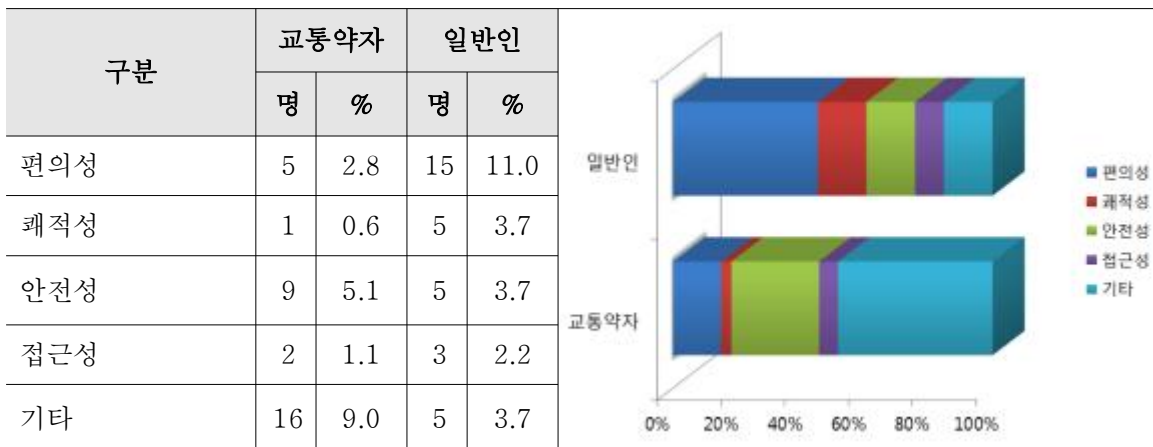
- 임실군 장애인콜밴,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이용 만족도는 3.19점으로 나타남
  -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이용대상자인 장애인 80.0%, 고령자 87.2%, 임산부 86.4%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임실군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및 확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44> 특별교통수단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용안함	만족도
장애인	명	0	3	5	2	0	40	3.10
	%	0.0%	6.0%	10.0%	4.0%	0.0%	80.0%	
임산부	명	0	2	0	0	1	19	3.00
	%	0.0%	9.1%	0.0%	0.0%	4.5%	86.4%	
고령자	명	1	2	4	2	1	68	3.00
	%	1.3%	2.6%	5.1%	2.6%	1.3%	87.2%	
어린이	명	5	2	4	0	2	14	3.62
	%	18.5%	7.4%	14.8%	0.0%	7.4%	51.9%	
일반인	명	3	7	29	3	2	92	3.14
	%	2.2%	5.1%	21.3%	2.2%	1.5%	67.6%	
전체	명	9	16	42	7	6	233	3.19
	%	2.9%	5.1%	13.4%	2.2%	1.9%	74.4%	

<표 3-45>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불만족 이유



주 : 복수응답, 불만족/매우 불만족인 경우 불만족 이유 선택

■ 전반적인 교통수단 만족도(n=273)

■ 임실군 전반적인 교통수단 만족도는 2.89점으로 나타남

- 임산부의 만족도가 2.67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일반인(2.84점), 고령자(2.88점), 장애인(2.98점), 어린이(3.19점)순으로 나타남

■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보통이다'라는 것이 50% 이상이었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과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

<표 3-46> 전반적인 여객수단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장애인	명	0	11	19	12	0	2.98
	%	0.0%	26.2%	45.2%	28.6%	0.0%	
임산부	명	0	1	13	1	3	2.67
	%	0.0%	5.6%	72.2%	5.6%	16.7%	
고령자	명	1	15	36	11	7	2.88
	%	1.4%	21.4%	51.4%	15.7%	10.0%	
어린이	명	2	8	12	1	3	3.19
	%	7.7%	30.8%	46.2%	3.8%	11.5%	
일반인	명	1	17	70	20	9	2.84
	%	0.9%	14.5%	59.8%	17.1%	7.7%	
전체	명	4	52	150	45	22	2.89
	%	1.5%	19.0%	54.9%	16.5%	8.1%	

<표 3-47> 전반적인 여객수단 만족도(2)



5) 종합평가

■ 개선이 시급한 시설 및 수단(n=313)

- 교통약자와 일반이 모두 보행시설과 교통수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3-48> 개선이 시급한 시설 및 수단

(단위 : 명, %)

구분		보행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기타	합계
교통약자	명	66	82	22	7	177
	%	37.3%	46.3%	12.4%	4.0%	100.0%
일반인	명	53	58	18	7	136
	%	39.0%	42.6%	13.2%	5.1%	100.0%

■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n=307)

-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은 교통약자 65.1%, 일반인 57.6%로 보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표 3-49>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

(단위 : 명, %)

구분		보도	횡단보도	육교	합계
교통약자	명	114	61	0	175
	%	65.1%	34.9%	0.0%	100.0%
일반인	명	76	55	1	132
	%	57.6%	41.7%	0.8%	100.0%

■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n=306)

- 교통약자의 65.7%, 일반인의 57.5%가 버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3-50>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

(단위 : 명, %)

구분		버스	일반택시	장애인택시	기타	합계
교통약자	명	113	17	23	19	172
	%	65.7%	9.9%	13.4%	11.0%	100.0%
일반인	명	77	24	16	17	134
	%	57.5%	17.9%	11.9%	12.7%	100.0%

■ 개선이 시급한 여객시설(n=308)

- 교통약자의 50.9%, 일반인의 45.2%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교통약자의 38.7%, 일반인의 33.3%가 버스 정류장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3-51> 개선이 시급한 여객시설

(단위 : 명, %)

구분		보도, 횡단보도 등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기타	합계
교통약자	명	88	67	9	9	173
	%	50.9%	38.7%	5.2%	5.2%	100.0%
일반인	명	61	45	16	13	135
	%	45.2%	33.3%	11.9%	9.6%	100.0%

■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n=309)

-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38.5%, 일반인 42.2%가 버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통약자 35.1%, 일반인 19.3%가 특별이동수단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버스 편의시설 설치와 특별 이동수단 확대가 최우선과제로 드러남

<표 3-52> 우선추진사항

(단위 : 명, %)

구분		버스 편의시설 설치	특별이동수단 확대	자가운전자 지원 강화	보행환경 개선	기타	합계
교통약자	명	67	61	7	35	4	174
	%	38.5%	35.1%	4.0%	20.1%	2.3%	100.0%
일반인	명	57	26	11	35	6	135
	%	42.2%	19.3%	8.1%	25.9%	4.4%	100.0%

## 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만족도 점수 산출방법

■ 만족도는 5간척도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

- 매우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불만족: 1점

■ 만족도 평균값 산출: 만족도 평균값=(응답자수×만족도 점수)/응답자수 합

### 2) 교통약자 만족도 분석

<표 3-53> 임실군 전체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만족도	백점환산
보 행 시 설	보도	11	62	133	83	14	303	2.91	58.22
		3.6%	20.5%	43.9%	27.4%	4.6%	100.0%		
	횡단보도	10	55	131	65	23	284	2.87	57.46
		3.5%	19.4%	46.1%	22.9%	8.1%	100.0%		
여 객 시 설	버스정류장	5	46	141	61	13	266	2.88	57.68
		1.9%	17.3%	53.0%	22.9%	4.9%	100.0%		
	여객자동차 터미널	8	47	113	73	22	263	2.80	55.92
		3.0%	17.9%	43.0%	27.8%	8.4%	100.0%		
교 통 수 단	버스	8	51	128	62	20	269	2.87	57.44
		3.0%	19.0%	47.6%	23.0%	7.4%	100.0%		
	특별 이동수단	9	16	42	7	6	80	3.19	63.82
		11.3%	20.0%	52.5%	8.8%	7.5%	100.0%		

<표 3-54> 임실군 교통약자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만족도
보행 시설	보도	8	30	67	57	8	170	2.84
		4.7%	17.6%	39.4%	33.5%	4.7%	100.0%	
	횡단보도	7	32	70	40	12	161	2.89
		4.3%	19.9%	43.5%	24.8%	7.5%	100.0%	
여객 시설	버스정류장	5	28	77	31	8	149	2.94
		3.4%	18.8%	51.7%	20.8%	5.4%	100.0%	
	여객자동차 터미널	6	34	58	39	13	150	2.88
		4.0%	22.7%	38.7%	26.0%	8.7%	100.0%	
교통수단	버스	7	36	63	35	12	153	2.94
		4.6%	23.5%	41.2%	22.9%	7.8%	100.0%	
	특별 이동수단	6	9	13	4	4	36	3.25
		16.7%	25.0%	36.1%	11.1%	11.1%	100.0%	

<표 3-55> 임실군 일반인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만족도
보행 시설	보도	3	32	66	26	6	133	3.00
		2.3%	24.1%	49.6%	19.5%	4.5%	100.0%	
	횡단보도	3	23	61	25	11	123	2.85
		2.4%	18.7%	49.6%	20.3%	8.9%	100.0%	
여객 시설	버스정류장	0	18	64	30	5	117	2.81
		0.0%	15.4%	54.7%	25.6%	4.3%	100.0%	
	여객자동차 터미널	2	13	55	34	9	113	2.69
		1.8%	11.5%	48.7%	30.1%	8.0%	100.0%	
교통수단	버스	1	15	65	27	8	116	2.78
		0.9%	12.9%	56.0%	23.3%	6.9%	100.0%	
	특별 이동수단	3	7	29	3	2	44	3.13
		6.8%	15.9%	65.9%	6.8%	4.5%	100.0%	

## IV

# 제2차 증진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1. 제2차 증진계획의 내용
2. 이동편의시설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3.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1. 제2차 증진계획의 내용

### 가. 제2차 증진계획의 내용

#### 1) 비전과 목표

- 제2차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개선·확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확대, 안전과 IT 기술의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이동편의를 위한 대책마련과 연구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
- 제1차 계획 시 국가 단일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제2차 계획은 차등목표치를 설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실태, 이용만족도를 종합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
  - 설치율 및 만족도(점수) = 0.7 × 설치율(점수) + 0.3 × 만족도(점수)

#### 2) 임실군의 목표치 설정

<표 4-1> 제2차 임실군의 설치율 및 만족도 달성목표

구분		2011년			2016년(2차 목표연도)			비고
		설치율	만족도	종합점수	설치율	만족도	종합점수	
교통수단	농어촌버스	50	60	53	65	75	68	
	여객자동차 터미널	46	67	52	65	75	68	
여객시설	철도역사	75	84	77	80	85	82	
	버스정류장	45	65	51	55	80	63	
보행환경	보도	64	60	63	80	85	82	

## 2. 이동편의시설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가. 총괄

■ 2016년 말 임실군의 현재 이동편의 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평균 51.5%이며, 이는 전국평균 72.5%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임실군의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상태임

- 교통수단 46.8%, 여객시설 37.5%, 보행환경 70.3%

<표 4-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구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교통수단	46.8%	4.8%	48.4%
여객시설	37.5%	9.4%	53.1%
보행환경	70.3%	4.3%	25.4%
평균	51.5%	6.2%	42.3%

주 1 : 기준적합\*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경우  
 주 2 : 기준미적합\*\*은 법적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거나, 유리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주 3 : 미설치\*\*\*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 나. 추진성과 분석

#### 1) 교통수단

##### ■ 실태조사 결과

■ 임실군의 교통수단은 농어촌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평균 기준적합 설치율은 46.8%로 나타남

<표 4-3> 교통수단별 이동편의 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현황)

(단위 : %, 점)

구분	2011년 말 현황		2016년 말 현황		비교	
	설치율	만족도	설치율	만족도	설치율	만족도
교통수단 임실군 농어촌버스	50	66	46.8	57.6	▼3.2	▼8.4

주 : 설치율은 기준적합 설치율만 고려한 수치임

2) 여객시설

■ 실태조사 결과

- 평균 기준적합 설치율은 약56.8%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37.5%,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모두 27.4%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2차 년도의 기준적합 설치율보다 하락하였음
- 만족도 역시 2차 년도의 만족도 보다 하락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55.9점, 버스정류장 57.7점으로 나타남

<표 4-4> 여객시설별 이동편의 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현황)

(단위 : %, 점)

구분		2011년 말 현황		2016년 말 현황		비교	
		설치율	만족도	설치율	만족도	설치율	만족도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45	67	37.5	55.9	▼7.56	▼11.9
	버스정류장	44	64	27.4	57.7	▼16.6	▼6.3

주 : 설치율은 기준적합 설치율만 고려한 수치임

3) 보행환경

■ 실태조사 결과

-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은 70.3%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

<표 4-5>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현황)

(단위 : %, 점)

구분		2011년 말 현황		2016년 말 현황		비교	
		설치율	만족도	설치율	만족도	설치율	만족도
보행 환경	보도 및 횡단보도	55	59	70.3	58.2	▲15.3	▼0.8

주 : 설치율은 기준적합 설치율만 고려한 수치임

### 3.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가. 저상버스

##### 1) 제2차 증진계획의 내용

- 제2차 계획의 목표치는 12대이며 100%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2) 추진성과 분석

- 제2차 계획기간(2012~2016) 저상버스 보급계획은 4대이며 실제 보급은 0대로 저조함
- 지형적 문제로 저상버스 도입 곤란 및 비용 등의 문제로 버스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 고려 필요

#### 나. 특별교통수단

##### 1) 제2차 증진계획의 내용

-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 법정기준 100% 달성을 목표로, 4대 설치를 예상함

##### 2) 추진성과 분석

- 2016년 말 기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3대로 법정대수 4대 대비 75.0% 보급
- 3차 계획기간 내에 법정기준 100% 보급

# V

## 제3차 증진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추진과제



## 1. 비전 및 목표

### 가. 계획의 기본방향

1) 비전 : 군민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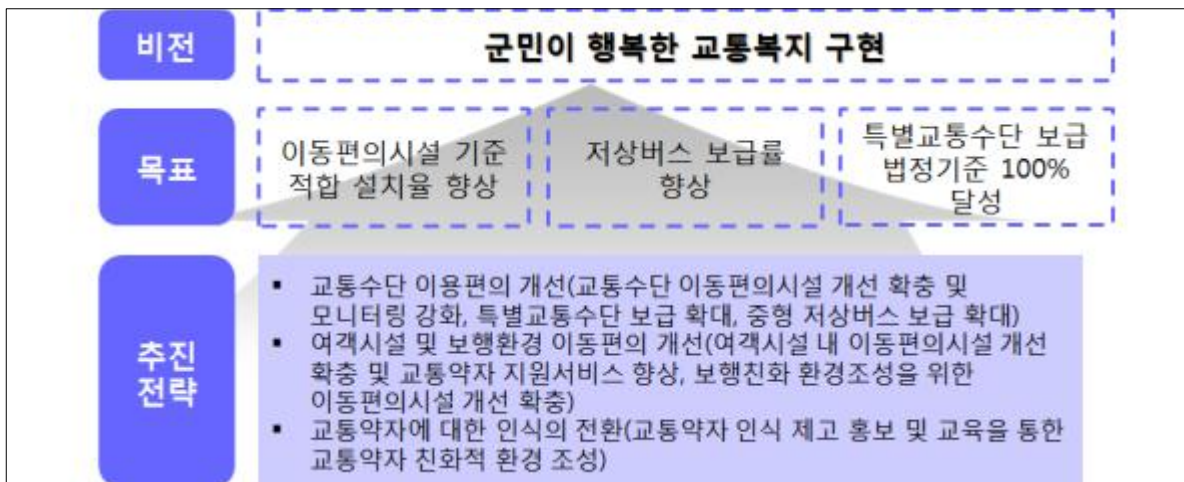
2) 목표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 저상버스 보급률 향상
- 특별교통수단 보급 법정기준 100% 달성

3)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
-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향상
  - 보행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교통약자 인식제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교통약자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림 5-1> 임실군 비전 및 추진전략



## 나. 목표치 설정

### 1) 이동편의 시설 목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설정

<표 5-1>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의 정의

(단위 : %)

정의		설치율 범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보수 및 관리)	안정화 및 유지단계	100~9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보수 및 개선 필요)	개선단계	89.9~85.0
		84.9~80.0
		79.9~75.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음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필요함)	확충단계	74.9~70.0
		69.9~65.0
		64.9~60.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시급함)	미흡단계	59.9~54.0
		53.9~47.0
		46.9~40.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매우 시급함)	시급단계	39.9~0

<표 5-2> 임실군 수단 및 시설별 목표치

(단위 : %)

수단 및 시설		'16년	'21년
		설치율	설치율
교통수단	농어촌버스	46.8(미흡단계)	60.0(확충단계)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37.5(시급단계)	60.0(확충단계)
	버스정류장	27.4(시급단계)	60.0(확충단계)
보행환경		70.3(확충단계)	80.0(개선단계)

###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목표

- 목표설정

#### (가) 저상버스

- 농어촌버스의 차령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 저상버스 보급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1대까지 보급

## (나)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 목표 연도까지 전 지자체에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 유지를 목표

&lt;표 5-3&gt;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목표치

구분	현재 보급률 (2016년)	목표연도 보급율 (2021년)	비고(선정근거)
특별교통수단	75.0%	100%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 3) 만족도 목표

## ■ 목표설정

- '11년과 '16년 만족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년 만족도는 '11년 대비 평균 모두 하락하였음

&lt;표 5-4&gt; 교통약자 유형별 만족도 점수

(단위 : %)

구분		'11년(①)	'16년(②)	비고(②-①)
교통수단	농어촌버스	60	57.4	▼2.6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7	55.9	▼11.1
	버스정류장	64	57.7	▼6.3
보행환경		59	58.2	▼0.8

&lt;표 5-5&gt; 이용자만족도 목표치(모든 분야 70점 이상)

(단위 : %)

구분		'16년	'21년
교통수단	농어촌버스	57	70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56	70
	버스정류장	58	70
보행환경		58	70

## 2. 중점추진과제

### 가.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 1) 총괄

- 기준적합 설치항목 중 기준 미적합 또는 미설치인 사항 중 기준 적합으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우선 개선
  - 적은 예산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 우선 고려
- 교통수단 이용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 > 비장애인 > 일반인 불만족 이동편의시설 우선개선

#### 2) 농어촌버스 시설개선

- 제3차 계획 기간 농어촌버스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목표는 약 60.0%('17년 46.8% → '21년 60.0%)

<표 5-6> 농어촌버스 차량의 개선 및 확충사항

구 분	내 용
2017년 설치율	46.8%(미흡단계)
2021년 목표치	60.0%(확충단계)
개선시급시설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교통약자 좌석, 승강구
이용자불만족시설	안내시설, 교통약자좌석, 승강구, 장애인접근가능표시

### 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 1) 총괄

- 저상버스는 농어촌버스 차량 및 재정여건 등 저상버스 보급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중형저상버스 2대 보급
-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 목표 연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 달성

## 2) 저상버스 보급 확대

- 농어촌버스의 운영 수익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적자보조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2대 보급

## 3)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 2016년 말 기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3대로 법정대수 4대 대비 75.0% 보급
- 3차 계획기간 내에 법정기준 100% 보급

## 다.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 2021년까지 기준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음 즉,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60% 이상 수준으로 향상(확충단계),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80% 이상 수준으로 향상(개선단계)

<표 5-7> 여객시설·보행환경 설치율 목표

(단위 : %)

구분	현재 서비스수준	2021년 서비스수준	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	37.5	60.0	·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함 조금 있음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필요함)
버스정류장	27.4	60.0	·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함 조금 있음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필요함)
보행환경	70.3	80.0	·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보수 및 개선 필요)

### 1) 여객자동차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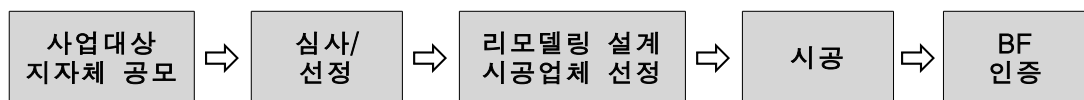
- 제3차 계획 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목표는 약 60.0%('16년 37.5% → '21년 60.0%)

<표 5-8>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선 및 확충사항

구 분	내 용
2017년 설치율	37.5%(시급단계)
2021년 목표치	60.0%(확충단계)
개선시급시설	안내시설, 위생시설, 내부시설
이용자불만족시설	안내시설, 위생시설, 내부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시범사업 실시

- 다중이용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BF (Barrier-Free)인증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하는 사업 실시 중 ('15~)
  - 교통약자가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시공하고 BF인증 취득
  - BF인증시범사업 실시 가능한 217개 터미널 중 공모방식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중
- '15년 5개소(청주, 창원, 울산남구, 제천, 충주) 사업 완료, '16년 3개소(수원, 광양, 영덕) 선정 후 국고보조금(3억원) 지급('16.8월)하여, 공사 진행 중
- BF 인증기준에 의한 출입구 단차제거, 고원식 횡단보도, 자동문, 미끄럼방지·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주차장 등 설치



2) 버스정류장

- 제3차 계획 기간 버스 정류장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목표는 약 60.0%('16년 27.4% → '21년 60.0%)

&lt;표 5-9&gt; 버스정류장의 개선 및 확충사항

구 분	내 용
2017년 설치율	27.4%(시급단계)
2021년 목표치	60.0%(확충단계)
개선시급시설	보도, 안내시설, 점자블록
이용자불만족시설	보도, 안내시설, 점자블록

### 3) 보행환경

- '21년 기준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수준 달성 즉,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16년 56.0% → '21년 70.0%)

&lt;표 5-10&gt; 보행환경의 개선 및 확충사항

구 분	내 용
2017년 설치율	70.3%(확충단계)
2021년 목표치	80.0%(개선단계)
개선시급시설	횡단보도 턱낮추기, 점자블록, 잔여시간표시기
이용자불만족시설	포장,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 VI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세부추진방안

1. 이동편의시설 개선 확충
2. 여객시설편의시설 개선 확충
3. 보행환경 개선 확충
4.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1.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가. 농어촌버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 개선 및 확충방향

-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특수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임실군의 재정여건 및 버스업체 등을 고려한 개선 및 확충 추진

#### ■ 대상

-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 좌석 안내판, 수직손잡이, 승강기 계단코 등

#### ■ 개선시급시설

- 교통약자 좌석 안내판 (38대) 보완설치(좌석의 1/3 설치)를 통한 목표 달성

구분	현재설치대수 (설치율)	2021년 목표대수 (설치율)	비고
교통약자 좌석 안내판	0대 (0.00%)	38대 (100.0%)	좌석의 1/3 설치



<그림 6-1> 교통약자 좌석 안내

❖ 확충시급시설

○ 문자안내판 38대(38대 확충) 확충 설치를 통한 목표 달성

구분	현재설치대수 (설치율)	2021년 목표대수 (설치율)	비고
문자안내판 기사음성안내	0대 (0.0%)	38대 (100.0%)	38대 추가설치



<그림 6-2> 농어촌버스 내부 모습



<그림 6-3> 농어촌버스 정면 모습

나. 중형저상버스 확충

❖ 개선 및 확충방향

○ 재정여건에 따라 확충

❖ 대상

○ 농어촌버스 대폐차시 교체

❖ 중형저상버스 도입 계획

○ 2021년까지 2대 도입 후 평가하여 추가 도입

구분	현재 운영대수	2021년 목표대수	비고
중형 정상버스	0대	2대	



<그림 6-4> 저상버스



<그림 6-5> 저상버스 이용

### 다. 장애인 콜택시 개선·확충

#### ■ 개선 및 확충방향

- 법정대수 100% 목표에 맞추어 시설 확충
- 임실군은 2015년 현재 지체 장애1,2급은 601명으로서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3대가 운영 중임. 법정대수는 4대(200명당 1대)이며 1대추가 확충

#### ■ 대상

-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 장애인콜택시

#### ■ 장애인콜택시 도입계획

- 2021년까지 장애인콜택시 1대 추가 도입

구분	현재운영대수	2017 목표대수	비고
장애인콜택시	3대	4대	



<그림 6-6> 장애인콜택시 외부



<그림 6-7> 장애인콜택시 내부

## 2. 여객시설 편의시설 개선·확충

### 가.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 개선 및 확충방향

- 여객터미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 대상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행접근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등

#### ■ 개선시급시설

- 보행접근로 2개소, 장애인 화장실 2개소, 점자블록 3개소, 유도 및 안내시설 6개소 추가 설치 및 시설개선을 통한 목표 달성

구분	현재설치율	2021년 목표설치율	비고
보행접근로	66.7%	80.0%	2개소 확충설치
장애인 화장실	66.7%	80.0%	2개소 확충설치
점자블록	33.3%	60.0%	3개소 설치 3개소 시설보강
유도 및 안내시설	0.0%	60.0%	6개소 시설보강



<그림 6-8> 보행접근로



<그림 6-9> 장애인화장실



<그림 6-10> 점자블록



<그림 6-11> 장애인주차구역

## 나.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개선 · 확충

### ■ 개선 및 확충방향

- 버스정류장은 도로의 여건 등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 개선 추진

### ■ 대상

- 안내시설 및 대기시설 등

### ■ 개선시급시설

- 안내시설, 휠체어 활동공간, 점자블록 등 설치 및 시설개선을 통한 목표 달성

구분	현재설치율	2021년 목표설치율	비고
안내시설	16.7%	30.0%	
휠체어 활동공간	0.0%	30.0%	
점자블록	0.0%	30.0%	



<그림 6-12> 휠체어활동공간 부족



<그림 6-13> 안내판, 점자블록 미설치

### 3. 보행환경 개선·확충

#### 가. 보도시설 개선·확충

■ 개선 및 확충방향

- 통행량 및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시설 개선

■ 대상

-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등

■ 개선시급시설

- 블라드, 턱낮추기 등 보도시설을 개선하여 목표 달성

구분	현재설치율	2021년 목표설치율	비고
블라드	8.7%	30.0%	
턱낮추기	0.0%	30.0%	



<그림 6-14> 차량진출입부



<그림 6-15> 턱낮추기

#### 나. 횡단보도시설 개선·확충

■ 개선 및 확충방향

- 통행량 및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시설 개선

■ 대상

-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점자블록 등

■ 개선시급시설

○ 점자블록 추가 설치를 통한 목표 달성

구분	현재설치율	2021년 목표설치율	비고
점자블록	12.7%	30.0%	



<그림 6-16> 점자블록



<그림 6-17> 선형블록

## 4.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가. 홍보 및 교육

#### ■ 교통약자이동편의에 대한 교육대책

-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호운전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교통 사업자(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필요성, 중요성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
- ○ 휠체어탑승자 등 교통약자 탑승시 도움을 주는 방법 및 체험교육 시행 및 정확한 정차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

#### ■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책자개발을 통한 조기교육 실시

- 조기교육을 통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 및 이동편의의 중요성 인식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현황, 이용방법, 협조사항 등 교육교제 개발
- 학교 주변 교통약자 관련시설 및 이동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제작 및 배포
- 교육계획에 교통약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충자료 개발 및 지도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홍보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영상물, 홍보물 제작보급 및 활용
- 교통약자에 대한 영상물,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의 이용이 많은 버스 정류장 등의 교통시설 및 공공시설에 상영·부착
- 초·중·고등학생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여 수업시간에 적극 활용
- 홍보용 영상물을 공무원교육에 활용

# VII

## 투자 및 재정계획

### 1. 재정현황 분석



## 1. 재정현황 분석

### 가. 세입예산 현황

- 임실군의 2016년도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296,735백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예산의 약 45.76%인 135,800백만원이며 보조금이 37.27%인 110,590백만원으로 순으로 나타남
- 총 세입예산은 지난 2012년에 비해 연평균 3.76%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 등이 많이 증가하였음

<표 7-1>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지방세수입	9,090	9,400	9,030	9,240	9,810	1.92
세외수입	19,764	23,267	5,620	7,391	8,485	-19.05
지방교부세	131,388	139,524	133,812	133,500	135,800	0.83
조정교부금	4,000	4,000	3,000	4,000	4,000	0.00
보조금	91,732	83,612	94,951	120,289	110,590	4.7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7,691	22,141	28,050	25.92
세입예산 총계	255,974	259,803	264,104	296,561	296,735	3.76

자료 : 예산서(2012~2016), 임실군

### 나. 세출예산 현황

- 임실군의 2016년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은 319,182,976천원이며 이중 자본지출이 전체 세출예산의 약 40.34%인 128,754,551천원이며 경상이전이 29.11%인 92,920,467천원으로 순으로 나타남
- 총 세출예산은 지난 2012년에 비해 연평균 5.67%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용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 보전재원, 경상이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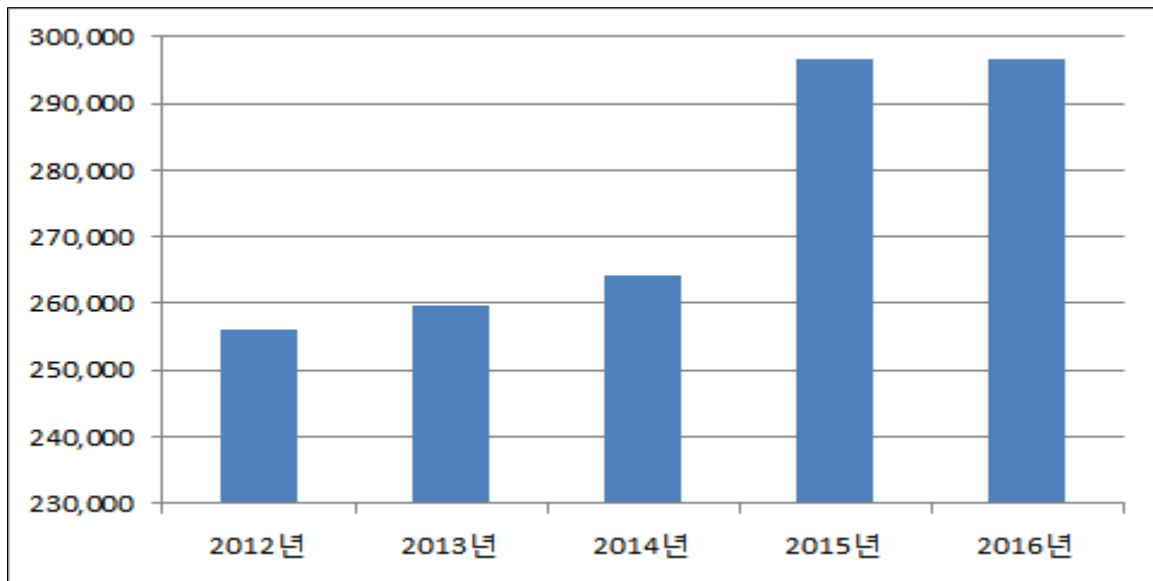
<표 7-2>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인건비	35,316,632	37,800,711	39,374,103	41,262,311	43,489,249	5.34
물건비	16,815,679	19,258,568	19,010,558	22,502,408	23,621,653	8.87
경상이전	63,400,783	73,408,062	79,251,023	89,843,888	92,920,467	10.03
자본지출	127,587,849	116,009,581	115,443,247	138,323,769	128,754,551	0.23
융자 및 출자	84,000	33,600	28,800	1,128,800	838,800	-25.69
보전재원	900,000	900,000	900,000	1,481,200	1,481,200	28.29
내부거래	7,059,067	5,020,071	5,089,213	5,091,618	8,398,590	4.44
예비비 및 기타	4,810,180	7,373,560	5,008,324	10,821,180	19,678,466	42.22
세출예산 총계	255,974,190	259,804,153	264,105,268	310,455,174	319,182,976	5.67

자료 : 예산서(2012~2016), 임실군

<그림 7-1> 세입·세출 예산 추이



### 다. 재정자립도

- 임실군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1.27%에서 2016년 15.62%로 5년 동안 18.61% 증가하였음
- 반면, 동종평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16.41%에서 2016년

17.96%로 같은 기간 동안 2.28% 상승해 동종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 재정여건이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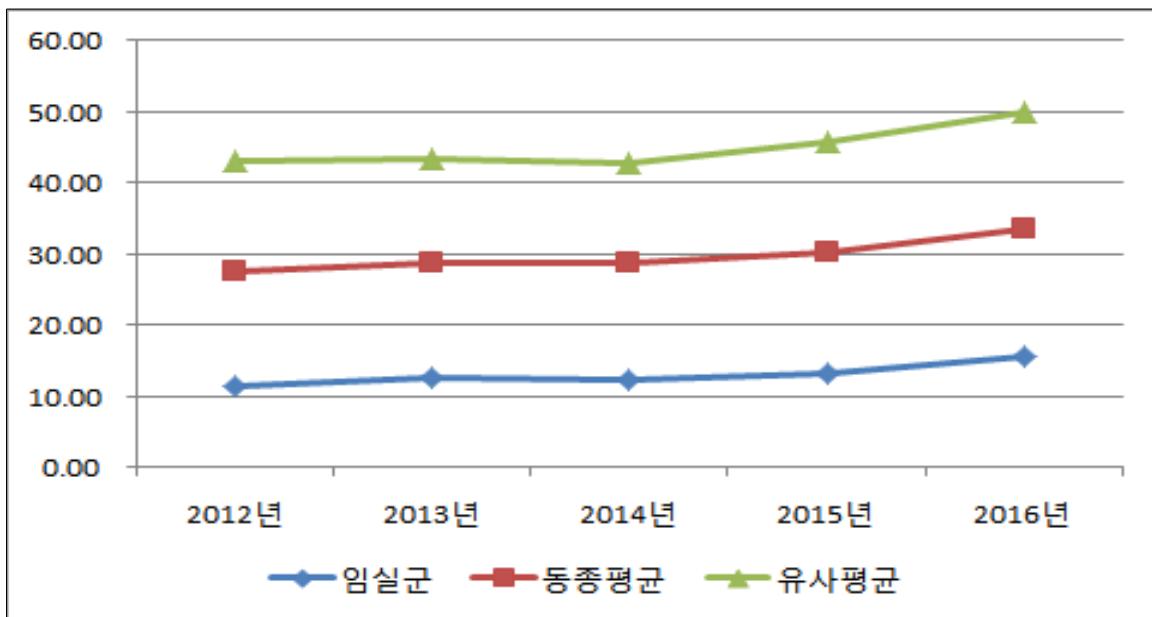
- 유사자치단체 평균은 15.38%에서 16.44%로 1.68% 증가하였음

<표 7-3>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임실군	11.27	12.57	12.25	13.07	15.62	8.50
동종평균	16.41	16.15	16.55	17.01	17.96	2.28
차이	-3.01	-3.09	-2.77	-3.81	-3.55	4.21
유사평균	15.38	14.56	14.11	15.60	16.44	1.68
차이	-1.98	-1.50	-0.33	-2.40	-2.03	0.63

<그림 7-2> 재정자립도 추이



## 2. 투자 및 재정계획

### 가. 연차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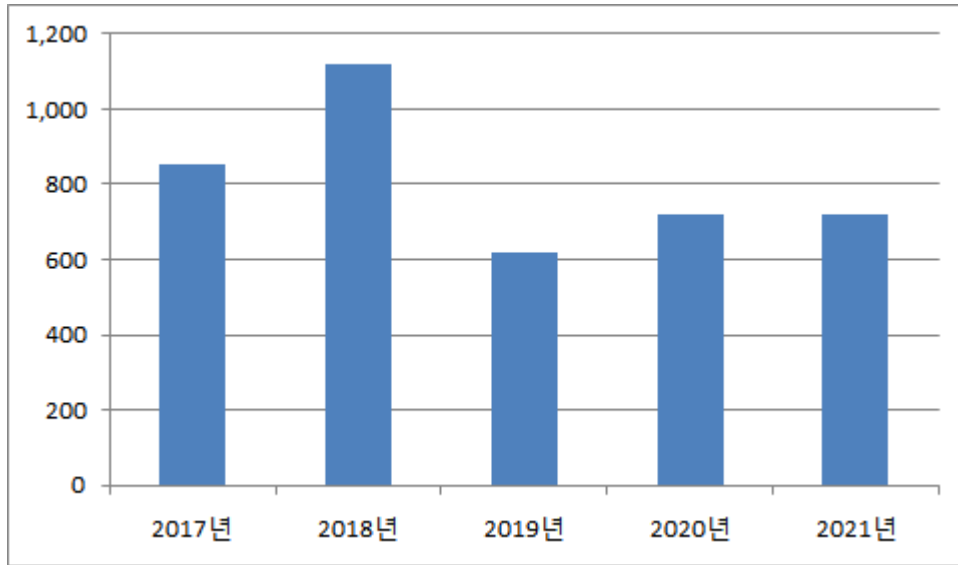
- 임실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될 재정은 총 3,885백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 851백만원(21.9%), 2018년 1,121백만원(28.9%), 2019년 621백만원(16.0%), 2020년 721백만원(18.6%), 2021년 721백만원(18.6%)임
- 임실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7-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목표 / 추진전략	연차별 계획					총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80	610	110	210	210	1170
농어촌버스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0	510	10	10	10	550
중형저상버스 확충	0	0	0	100	100	50
장애인콜택시 확충	170	100	100	100	100	570
여객시설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340	180	180	180	180	1,060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200	40	40	40	40	360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40	140	140	140	140	700
보행환경 개선 및 확충	330	330	330	330	330	1650
보도시설 개선 및 확충	230	230	230	230	230	1150
횡단보도시설 개선 및 확충	100	100	100	100	100	500
교통약자 인식전환 교육	1	1	1	1	1	5
교통약자 인식제고 홍보 및 교육	1	1	1	1	1	5
총 계	851	1,121	621	721	721	3,885

<그림 7-3> 연도별 투자계획



## 나. 임실군 예산

- 임실군 기능별 예산 중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문이 산업 및 중소기업으로 약 14.45% 감소하였으며, 반면 예비비,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7-5> 기능별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일반 공공행정	14,623	15,147	16,349	14,016	19,049	6.83
공공질서 및 안전	1,002	688	585	546	690	-8.90
교육	2,041	1,548	1,293	2,185	1,945	-1.20
문화 및 관광	14,579	10,984	9,930	9,707	13,970	-1.06
환경보호	21,080	14,781	15,704	19,646	22,327	1.45
사회복지	31,507	39,864	44,525	52,519	54,844	14.86
보건	4,498	5,594	4,435	4,507	5,945	7.22
농림해양수산	75,769	75,167	65,156	77,210	69,333	-2.19
산업·중소기업	1,150	539	685	601	616	-14.45
수송 및 교통	9,450	9,878	8,558	11,670	9,652	0.53
국토 및 지역개발	34,491	34,480	47,397	50,028	39,515	3.46
예비비	3,810	6,374	4,008	6,466	9,597	25.98
기타	41,973	44,759	45,482	47,460	49,253	4.08
전체	255,973	259,803	264,107	296,561	296,736	3.76

자료 : 예산서(2012~2016), 임실군

# 부록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
2. 만족도 및 통행실태 설문조사지



## 1.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1. 교통수단

#### 가. 버스

#####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 3) 행선지 표시

- 가) 버스의 행선지는 버스 외부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행선지 표시는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휠체어 승강설비

- 가) 저상형 농어촌버스는 좌석 공간을 제외한 차량 안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차·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 수 있다.
- 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 사용자의 주 출입구로 정하고 해당 승강구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교통약자용 좌석

-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정차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수직손잡이

- 가) 저상형·일반형 농어촌버스 및 농어촌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철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 가) 차량의 행선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행선지 표시는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이고,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의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 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 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출입구 통로

- 가) 승강구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은 각각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의 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차할 수 있도록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승강구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나목3)을 준용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직손잡이

가) 수직손잡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7) 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1) 안내시설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내부시설

- 가)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 3) 그 밖의 시설

- 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 나) 항공기 안의 통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선박

###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목적항의 항명 및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목적항의 항명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박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나목3)을 준용한다.

### 4) 휠체어 승강설비

- 가)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엘리베이터 안의 넓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명당 1곳 이상 설치하  
 되,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  
 치하되, 해당 선박의 규모·구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나목6)을 준용한다.

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와 선박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객석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  
 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  
 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여객시설

가. 보행접근로

1)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  
 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  
 다.

3)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  
 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 출입구

##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가)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연속된 때에는 문을 열고 닫는 데 필요한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라)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2) 문의 형태

- 가)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가)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여객시설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그 밖의 시설

- 가) 여객시설 주 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나) 여객시설의 주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 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차·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통로

1) 유효폭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50미터 이내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8미터×1.8미터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바닥

-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계단·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통로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보행장애물

가)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통로의 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안전성 확보

가) 통로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키플레이트(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벽면 보호대 또는 안전판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하여야 한다.

#### 마. 경사로

#####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경사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1.5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기울기

가)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높이가 16센티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3) 손잡이

- 가)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을 적용한다.

4) 재질 및 마감

- 가)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여객시설 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마)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 가)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 가)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 라)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그 밖의 시설

- 가)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라목(3)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 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1.4미터 이내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각 층의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사)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사. 에스컬레이터

##### 1) 설치 장소

- 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 보도 여건 및 승객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나) 내부 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유효폭 및 속도

- 가)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1) 계단의 형태

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디딤판 및 첩면

가) 계단에는 첩면(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으로 하고 첩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같은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첩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첩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을 적용한다.

#### 5) 재질 및 마감

가)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나)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6) 그 밖의 시설

가)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코는 계단 바닥재의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 자. 장애인전용화장실

#### 1) 일반사항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대변기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이고,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

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열리도록 할 수 있다.
- 마)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바)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사)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장애인전용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자)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변기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안팎,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세면대

- 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수도꼭지에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이상으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 차. 점자블록

##### 1) 설치장소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2) 규격 및 색상

-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원뿔절단형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pm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pm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3) 설치방법

- 가)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각·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유도 및 안내시설

- 1)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3) 여객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를 여객시설의 종합안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시 등에 표기해야 하며, 외부 출입구 주변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타.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비상벨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파.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1)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前面)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3)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 및 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7)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 또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개찰구

- 1)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2) 개찰구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이상 0.9미터 이내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더. 보안검사장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사장(항공기의 객실 안으로 총포·도검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을 검사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도어형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검사장 안에 휠체어 사용자 등 도어형 금속탐지기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러.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에 마련된 것으로서 해당 승강구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며. 대기시설

- 1)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1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

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 3)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함께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을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 4)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행선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안팎에 설치하여야 한다.
- 5)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 6) 버스정보 안내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버. 임산부 휴게시설

##### 1) 설치장소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구조

가)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 수 있다.

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

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나)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포장

- 가)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기울기

- 가)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차도와 보도 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다) 보도 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5) 차량 진출입부

- 가)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 나)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 낮추기

-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 라)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라목3)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다목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1) 차도가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간에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노면표시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 2. 만족도 및 통행실태 설문조사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답자께서 제공하는 정보는 순수하게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충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전북정책발전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관 : 전라북도 임실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
- 조사기관 : 사단법인 전북정책발전연구원(063-231-1091)

### 응답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주지역	전라북도 임실군 _____ (읍, 면)
연 령	<input type="checkbox"/> ① 2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20세~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30세~4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40세~5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50세~6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65세 이상
성 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교 통 약 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① 지체장애인 <input type="checkbox"/> ② 시각장애인 <input type="checkbox"/> ③ 청각장애인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장애인(복합장애인) <input type="checkbox"/> ⑤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⑥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⑦ 어린이 <input type="checkbox"/> ⑧ 비장애인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①              급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걷거나 차량,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할 때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 ① 예       ② 아니요

2.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여기십니까?

- ① 이동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음  
 ②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가끔 신체적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  
 ③ 이동하는데 불편하며 가끔 도움이 필요함  
 ④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함

3.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외출하십니까?

- ① 매일 외출함     ② 5~6회     ③ 3~4회     ④ 1~2회     ④ 거의 없음

4.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06~08시     ② 08~10시     ③ 10~12시     ④ 12~14시     ④ 14~16시  
 ① 16~18시     ② 18~20시     ③ 20~22시     ④ 22~24시     ④ 22~24시이후

5. 외출시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가장 많은 2개에 V표 하십시오)

- ① 걸어서     ② 휠체어(수동 또는 전동)     ③ 자가용     ④ 버스  
 ⑤ 택시     ⑥ 장애인 택시     ⑦ 무료 셔틀버스  
 ⑧ 기타(\_\_\_\_\_)

6. 외출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직업 또는 업무상 외출     ② 복지관 · 경로당     ③ 병원 · 보건소     ④ 학교 · 학원  
 ⑤ 종교     ⑥ 친구 · 친척     ⑦ 상점 · 쇼핑     ⑧ 취미 · 오락     ⑨ 운동  
 ⑩ 기타(\_\_\_\_\_)

7. 외출시 주된 목적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 ① 10분이내     ② 30분이내     ③ 1시간이내     ④ 1시간 이상

8. 외출시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 ① 불편함이 없음
- ② 보도가 없고 턱이 많고 차가 많아 걸어다닐 때 불편하다
- ③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하다.
- ④ 터미널, 기차역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
- ⑤ 기타(\_\_\_\_\_)

걸어 다닐 때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불만족 이유는 2개 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1. 보도를 이용할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①매우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보통 <input type="checkbox"/> ④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⑤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보도가 울퉁불퉁함		<input type="checkbox"/> ② 보도의 폭이 좁음			
	<input type="checkbox"/> ③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④ 보도가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음			
	<input type="checkbox"/> ⑤ 횡단보도의 턱이 높음		<input type="checkbox"/> ⑥ 점자블록이 없거나 끊겨 있음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2. 지역 내 육교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①매우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보통 <input type="checkbox"/> ④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⑤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계단이 급하고 간격이 높다		<input type="checkbox"/> ②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③ 계단 손잡이가 없거나 노후됐다		<input type="checkbox"/> ④ 야간에 어두워 무섭다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3. 지역 내 횡단보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①매우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보통 <input type="checkbox"/> ④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⑤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횡단보도의 포장 불량		<input type="checkbox"/> ② 횡단보도의 좌우 기울기			
	<input type="checkbox"/> ③ 신호등 또는 잔여시간표시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			
	<input type="checkbox"/> ⑤ 점자블록이 없거나 끊겨 있음		<input type="checkbox"/> ⑥ 음향신호기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4. 전반적인 도로(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안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통수단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불만족 이유는 2개 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1. 지역 내 일반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①매우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보통 <input type="checkbox"/> ④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⑤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안내시설 [문자 및 음성안내] <input type="checkbox"/> ② 승강구 [탑승불편 및 계단 재질 등] <input type="checkbox"/> ③ 내부 공간 및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크기 등] <input type="checkbox"/> ④ 장애인접근표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2. 지역 내 장애인 콜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①매우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보통 <input type="checkbox"/> ④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⑤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편의성 <input type="checkbox"/> ② 쾌적성 <input type="checkbox"/> ③ 안정성 <input type="checkbox"/> ④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⑤기타( )

3.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안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합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보행시설(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등)      ②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  
 ③ 여객시설(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등)  
 ④ 기타(\_\_\_\_\_)
  
2. 귀하의 입장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보행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보도(인도)                       ② 횡단보도                       ③ 육교
  
3. 귀하의 입장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버스                       ② 일반택시                       ③ 장애인 택시                       ④ 기타
  
4. 귀하의 입장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보도, 횡단보도 등      ② 버스정류장      ③ 택시정류장      ④ 기타
  
5. 교통약자에 이동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버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  
 ②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이동수단(저상버스, 장애인택시 등) 확대 설치  
 ③ 자가운전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  
 ④ 안전하며 장애물이 없도록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⑤ 기타(\_\_\_\_\_)

6.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